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2011. 3.**

**환경노동위원회**

#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기간 .....	1
3. 감사실시 대상기관 .....	1
4. 감사위원회의 구성 .....	2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5
6. 일반증인 출석 현황 .....	7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12
가. 시정·처리요구현황 .....	12
(1) 환경부소관 .....	12
(2) 고용노동부소관 .....	23
(3) 기상청소관 .....	32
나. 시정·처리요구사항 .....	34
(1) 환경부소관 .....	34
(2) 고용노동부소관 .....	89
(3) 기상청소관 .....	133
8.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	143
9. 증인고발 사항 .....	143

##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 2010. 10. 4(월) ~ 10. 23(토) (20일간)

## 3. 감사실시 대상기관

위원회선정대상기관	본회의승인대상기관
<p>1. 국가기관  가. 환경부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다. 국립환경과학원  라. 국립생물자원관  마.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바. 기상청  사. 국립기상연구소  아. 국가기상위성센터  자. 고용노동부  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카. 중앙노동위원회</p> <p>2. 공공기관  가. 한국환경공단  나. 국립공원관리공단  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마. 근로복지공단  바. 한국산업인력공단  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 한국고용정보원  차.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카. 한국기술교육대학교</p> <p style="text-align: center;">&lt;이상 22개 기관&gt;</p>	<p>1. 지방행정기관(20개 기관)  가. 유역환경청(4개청)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  나. 지방환경청(4개청)  ◦ 수도권대기, 원주, 대구, 전주  다. 지방기상청(5개청) 및 항공기상청  ◦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제주, 항공기상청  라. 지방고용노동청(6개청)  ◦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p> <p style="text-align: center;">&lt;이상 20개 기관&gt;</p>

#### 4. 감사위원회의 구성

##### 가. 감사위원(단일반)

감사위원장	김성순 위원장	(민주당)
감사위원	신영수 위원	(한나라당)
"	강성천 "	"
"	손범규 "	"
"	원희룡 "	"
"	이범관 "	"
"	이정선 "	"
"	조해진 "	"
"	주호영 "	"
"	차명진 "	"
"	홍영표 위원	(민주당)
"	이미경 "	"
"	이찬열 "	"
"	이영애 위원	(비교섭단체)
"	홍희덕 위원	(비교섭단체)

나. 사무보조자 : 이 병 길 (수석전문위원)  
 원 창 희 (전문위원)  
 방 건 환 (입법조사관)  
 유 세 환 ( " )  
 윤 광 식 ( " )  
 정 석 배 ( " )  
 이 형 진 ( " )  
 구 본 근 ( " )  
 이 보 림 ( " )  
 손 명 동 ( " )  
 한 상 춘 (입법조사관보)  
 김 태 경 ( " )  
 최 윤 희 (사 무 원)  
 임 현 숙 ( " )  
 염 혜 윤 ( " )

다. 속 기 사 : 이순영, 정영희, 김윤정, 신재선, 이은영

라.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방 종 현 (한나라당)  
 유 은 종 (한나라당)  
 황 규 필 (한나라당)  
 기 동 민 (민 주 당)  
 이 재 휘 (민 주 당)

마. 감사위원 보좌진

김 평 수	비서관	(김성순 위원장실)
유 광 현	보좌관	(신영수 의원실)
윤 지 현	보좌관	(강성천 의원실)
이 민 경	보좌관	(손범규 의원실)
안 재 태	비 서	(원희룡 의원실)
문 재 응	비서관	(이범관 의원실)
조 재 한	비 서	(이정선 의원실)
박 민 구	보좌관	(조해진 의원실)
염 석 훈	비서관	(주호영 의원실)
최 승 우	보좌관	(차명진 의원실)
김 진 원	보좌관	(홍영표 의원실)
곽 현	보좌관	(이미경 의원실)
곽 용	비서관	(이찬열 의원실)
박 영 미	보좌관	(이영애 의원실)
이 혜 수	비서관	(홍희덕 의원실)

##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4일 (월)	10:00	환 경 부	환경부 회의실	
10월 5일 (화)	10:0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회의실	
10월 6일 (수)		자 료 정 리		
10월 7일 (목)	10:00	기 상 청 국립기상연구소 5개 지방기상청 (부산·광주·대전·강원·제주) 국가기상위성센터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회의실 (충북 진천)	국가기상슈퍼컴 퓨터센터 시찰 (충북 오창)
10월 8일 (금)	10:0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국 회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배석
10월 9일(토) ~ 10월 10일(일)		공 휴 일		
10월 11일 (월)	10:30	낙동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부산  【부산 1박】
10월 12일 (화)	10: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현대자동차 관계자 출석  부산→서울
10월 13일 (수)		자 료 정 리		

일자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
10월 14일 (목)	10:00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한강유역환경청	팔당유기농 단지 시찰
10월 15일 (금)	10:00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 회	
10월 16일(토) ~ 10월 17일(일)		공 휴 일		
10월 18일 (월)	10:0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매립지현장 및 RDF 제조시설 시찰
10월 19일 (화)	10:00  14:00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전주지방환경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영산강유역환경청 회의실	서울→광주  광주→서울
10월 20일 (수)		자 료 정 리		
10월 21일 (목)	10:00	환 경 부	국 회	
10월 22일 (금)	10:00	고용노동부	국 회	



## 6. 일반증인 출석현황

### 【환경 분야】

(단위 : 인)

교섭단체명	증인	참고인	계
한나라당	2	13	15
민주당	3	15	18
비교섭단체	0	2	2
	5	30	35

### 【고용노동 분야】

(단위 : 인)

교섭단체명	증인	참고인	계
한나라당	0	5	5
민주당	5	9	14
비교섭단체	9	5	14
	14	19	33

## 환경분야 증인·참고인

대상기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환경부 10. 4(월)	참고인	박재광	위스콘신대학교 교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
		김계현	인하대 교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
	참고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정책팀장	지방자치단체의 폐가전제품 수거 현황	○
	증인	최양하	한샘 대표이사	계약상 제품환경등급과 다른 제품 납품 의혹사실 확인	○
		유민근	SH공사 사장	계약상 제품환경등급과 다른 제품 납품 의혹사실 확인	○
	참고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	4대강 사업	○
	참고인	홍중호	서울대 교수	4대강 사업 및 비용편익 분석 관련	×
	증인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 본부장 (참석 불가능시 종합감사 때 출석요구)	4대강 사업	○
	증인	김창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심명필 본부장 출석 날과 동일한 날 출석요구)	4대강 사업	○
	참고인	김좌관	부산카톨릭대 교수	4대강 사업	○
참고인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4대강 사업	○	
낙동강 유역 환경청 10. 11(월)	참고인	신현석	부산대 교수	물부족 대응 치수 정책 필요성	○
		김대희	낙동강살리기시민연대 수석대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
		권기창	경북도립대 교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
	참고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	4대강(낙동강)	○
		이준경	낙동강네트워크 사무처장	4대강(낙동강)	○
	참고인	송찬흡	건설노조 대구경북 지부장	4대강 공사 작업과정 하천 오염	○

대상기관	구분	성명 및 직책		신문요지	출석
한강유역 환경청 10. 14(목)	참고인	공동수	경기대 교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
		박철휘	서울시립대 교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
		강천심	경안천살리기본부 본부장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	○
	참고인	이상훈	수원대 교수	4대강 사업관련	○
	참고인	유영훈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4대강(한강)	○
		이향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한강)	○
영산강 유역 환경청 10. 19(화)	참고인	유병로	한밭대학교 교수	금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 질개선 효과	○
		송재준	목포대학교 교수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	○
		김창원	영산강벚길 연구소 소장	영산강 살리기에 대한 지역여 론	○
		오정근	자연보호충남협의회 회장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의 견	○
	참고인	정민걸	공주대 교수	4대강(금강)	○
		허재영	대전대 교수	4대강(금강)	○
		구능희	진안읍주민연대공동 대책위 사무국장	용담댐 상수원 상류 폐기물매 립장 관련	○
	참고인	이성기	조선대 교수	4대강 사업관련	○
		이홍주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4대강 사업관련	×
	참고인	양홍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금강 물고기 떼죽음사고, 수변 구역 개발사업	○
환경부 (종합) 10. 21(목)	증 인	유재범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장	해양오염관련	○
	참고인	최장량	난지도 유류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해양오염관련	○
계	35인(증인 5인, 참고인 30인)				

## 고용노동분야 증인·참고인

대상기관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
고용 노동부 10. 5(화)	참고인	조영길 변호사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관련 사용자 성 인정 최근 판례에 대한 입장	○
		남성일 서강대 교수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관련 사용자 성 인정 최근 판례에 대한 입장	○
		임현술 동국대 교수	삼성전자 백혈병관련	○
	증인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비정규직 문제 노조탄압 등	○
		김문덕 한국서부발전 사장	발전노조 단협해지 관련	○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한국노동연구원 이사장 공석 관련	○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직무대행	한국노동연구원 정상화 지연 관련	○
	참고인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타임오프 관련	○
		조경배 순천향대 법학과 교수	현대자동차 관련	×
		이상호 한국노동연구원 지부장	노동연구원 정상화 지연 관련	○
		이종란 반올림노무사	삼성반도체 노동자 사망(백혈병) 관련	○
		황상기 산재 사망자 (고 황유미씨)의 부친	삼성반도체 관련	○
		증인	손정웅 건설근로자 공제회 전 이사장	공제회 기금 투자 의혹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토지 및 건물의 무 상 양도 문제	○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10. 8(금)	증인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대표이사	사용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류지형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			노사갈등(노조탄압)	○
참고인		홍성대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장	노사관계 파행, 일방적 단협해 지, 노조탄압	○
대구지방 고용	참고인	강호돈 현대자동차 부사장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

대상기관	구분	성명 직책	신문요지	출석
노동청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10. 12(화)	증인	강기봉 발레오전장시스템스 코리아(주) 사장	공격적 직장폐쇄 사무직원 강제 동원 및 용역깡패 폭력 지시	○
	참고인	한효섭 금속노조 경주지부장	타임오프 관련 포항지청 과도한 개입	○
		최병승 현대자동차 대법판결 당사자	사내하청 관련 (비정규직 불법 파견)	○
	증인	차순도 계명대 동산의료원 의료원장	식당 비정규노동자 집단 해고	×
		오송대 (합자) 보수산업 대표 사원	환경미화원 임금 착복	○
	참고인	이화자 계명대 동산의료원 분회장	식당 비정규노동자 집단 해고	○
산업안전 보건공단 10.15(금)	참고인	백도명 서울대 교수	삼성반도체 백혈병 관련	○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10.19(화)	증인	김종호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부당노동행위	○
	참고인	이정진 여수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여수·광양산단 노동자 역학 조사 및 사후조치관련 진행경과 점검	○
	참고인	이백윤 동희오토 노조지회장	사내하청 관련 (비정규직 불법 파견)	○
	참고인	배근호 동희오토 사장	사내하청 관련 (비정규직 불법 파견)	○
고용 노동부 10.22(금)	증인	조용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부당노동행위	○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노조 탄압	○
	참고인	박근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동조합 지부장	부당노동행위	○
		채길용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지부장	수주 물량 해외 빼돌리기를 통한 국내공장 폐쇄	○
계	33인(증인 14인, 참고인 19인)			

## 7.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가. 시정·처리 요구사항 현황

#### (1) 환경부 소관

#### 시 정 요 구 현 황

##### <환경부 본부>

- (1) 폐가전제품의 관리 부실
- (2) SH공사 시공 아파트 내부 가구의 기준 부적합
- (3) 대기오염자동측정망(TMS)의 조작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 (4) 음식물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음폐수의 무단방류
- (5)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운영 부실
- (6) 공군사격장 인근 토양 및 수질 등에 대한 조사 미흡
- (7) 수계관리기금사업 중 토지매수사업 등으로 인한 문제
- (8) 수계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화 필요
- (9) 불법 밀렵 밀거래 확대 단속 강화
- (10)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단계 공사 시 특혜 발생
- (11) 대구 파동 4차선 순환도로 공사현장 소음·분진 피해
- (12)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업무 이관으로 인한 국고유출 문제
- (13)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등으로 인한 부실
- (14) 성남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효과 미흡 및 사업방식 변경
- (15) 가야산 골프장 건설 추진 부적정
- (16)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실적 저조
- (17) 수도권 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 시 정 요 구 현 황

(18)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관행 개선

### <한강유역환경청>

- (1)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문제
- (2)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 위촉 문제
- (3)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문제
- (4) 민간단체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 재검토
- (2) 환경교육·홍보단 위촉 강사 관리 기준 강화
- (3)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사후점검 미비
- (4)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 처분
- (5) 우포늪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문제

### <금강유역환경청>

- (1)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문제

### <수도권대기환경청>

- (1)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 제도 부진 대책
- (2) 친환경 도료 사용 실태 조사 점검

## 시 정 요 구 현 황

### <원주지방환경청>

- (1) 4대강 공구 단양쪽부쟁이 서식지에 대한 걱정 조치

### <전주지방환경청>

- (1)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미비
- (2)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미통보 재발 방지

### <국립환경과학원>

- (1) 황사연구단 법적근거 마련

### <국립생물자원관>

- (1) 생물자원 국외반출 대책 마련

### <환경관리공단>

- (1)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사업 추진 내실화
- (2) 굴뚝 TMS 관리 부실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국립공원 내 폐광산 오염 저감대책 마련
- (2)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문제
- (3) 헬기관리 부실
- (4) 인사부정 및 하위직 적체현상 개선



## 시 정 요 구 현 황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생활폐기물 고품연료화 시범시설 문제
- (2) 슬러지자원화 시설 관련
- (3)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시찰 관련

## 처 리 요 구 현 황

### <환경부 본부>

- (1) 지하철역의 석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 (2) 목질관상제품 등의 발암물질 관리 대책 필요
- (3) 나노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
-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 필요
- (5)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확대
- (6) 빗물오염 저감시설 확대 필요
- (7) 리튬 2차전지 재활용 기술 상용화 확산 필요
- (8) 물관리 정책의 일원화 방안 마련
- (9) 녹색생활 운동의 실천적 방향으로 전환
- (10) 종이박스에 비닐테이프 활용 축소
- (11) 환경과목 교사의 환경전공자 확대 필요
- (12) PVC소재의 신분증을 친환경소재로 개선 필요
- (13) 국립공원 제도개선

## 처 리 요 구 현 황

- (14) 폐식용유 관리 감독 강화
- (15) 생태계교란종 및 외래종의 관리 감시 철저
- (16) 음폐수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
- (17) 석면문제에 대한 실태 공개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8)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전직 환경부 공무원 취직률 축소
- (19) 남한강 섬의 공군사격장 위치 이전 필요
- (20) 해안사구 파괴 방지
- (21) 버스 실내 공기질 대책 마련
- (22) 풍력발전소 소음 및 저주파음 관련 피해 대책
- (23) 폐금속광산 조사 철저 및 방제의 환경부 추진 필요
- (24) 층간소음 대책 마련
- (25) 새만금 수질 관리 대책
- (26) 녹색가정만들기 사업 주력 필요
- (27) 건설폐기물 분리 선별
- (28)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관련 지자체간 갈등 방지방안 마련
- (29) 환경산업 활성화
- (30)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재검토
- (31) 노로바이러스 제도 강화
- (32) 환경감시단의 인력조정
- (33) 노후 수도관 교체
- (34) 생물다양성 협약 의정서 이행을 위한 제반 노력 경주
- (35)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
- (36) 전자파 및 생활공해 관리 필요
- (37) 동호안 매립시설 대책 강구

## 처 리 요 구 현 황

- (38) 퇴적물 규제기준 마련
- (3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변경 필요
- (40) 화학물질 위해·안전관리 강화 필요
- (41) 음용지하수 방사성 물질 관리대책 수립
- (42) 실내 라돈 안전관리 방안 마련
- (43) 국립공원 국유화방안 수립 필요
- (44) 구제역 지하수 검사 철저
- (45)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감면조치 미흡
- (46) 현대오일뱅크 병커C유 유출사고
- (47) RDF 사업의 사업성 과다 예측
- (48) 유해야생동물 대비 순환수렵장 활성화
- (49)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관련
- (50) 조류독감 매몰 지역 지방상수도 보급 지연
- (51) 지방자치단체 상징생물 지정사업 홍보 강화 필요
- (52) 하수처리장 운영상태 점검
- (53)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제반 지적사항

### <한강유역환경청>

- (1) 팔당 유기농 단지 문제
- (2) 총인처리시설에 수계기금을 투입하는 문제
- (3)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 4대강 사업 홍보 문제
- (4) 4대강 사업 목적과 배치되는 시설 최소화
- (5) 단양쪽부쟁이 이식성공 홍보 확대
- (6) 유역단위 하수도 정비 계획 필요

## 처 리 요 구 현 황

- (7) 고속도로 주변 비점 오염원에 대한 대책
- (8) 수질TMS 관리 및 정책 보완 필요
- (9) 공단폐수 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 (10) 취수 시설 등 식수원 보호 대책 필요
- (11) 한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문제

### <낙동강유역환경청>

- (1) 낙동강 수계기금 집행의 수질개선 효과성 제고
- (2) 4대강 홍보 관련
- (3) 4대강 공구 환경영향평가 미흡
- (4) 수질오염총량제 재검토 필요
- (5) 3공구 맹꽁이 서식지 훼손 최소화 대책 마련
- (6) 경남 지역 상수도 관리 부실 해결 대책 마련
- (7) 4대강 사업 공구 불법폐기물 발견 관련
- (8)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보완
- (9) 환경감시단 인원 충원 필요
- (10)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및 오염원 저감노력
- (11) 정수장 앞 폐기물 방치 등 현장감시 강화 필요
- (1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 (13)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 (14) 낙동강 퇴적토 발암물질 검출 보도 관련 대응

### <영산강유역환경청>

- (1)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필요

## 처 리 요 구 현 황

- (2) 영산강 친수공간 및 습지조성 확대
- (3)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하수 수질 개선 대책 마련
- (4) 비점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 필요
- (5) 광양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복구 및 후속대책 필요

### <금강유역환경청>

- (1) 금강하구 수질개선 대책 마련
- (2) 대청호 유람선 운항 계획 문제
- (3) 유등천 2지구 보전 대책 마련
- (4) 상수도 보호·관리 대책

### <수도권대기환경청>

- (1) 대기오염 관리대책 특성화
- (2)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 (3) 초미세먼지 관리
- (4)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강화
- (5) 자동차 배출저감 장치 사후 재활용 현황 점검

### <원주지방환경청>

-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중 4대강 사업 홍보 문제
- (2) 하수처리장 운영의 계획 및 설계 검증 강화
- (3) 연안침식 및 파괴 대책 수립
- (4) 폐금속 광산 주변 토양오염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대책 지역 지정 유도

## 처 리 요 구 현 황

- (5) 도암호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마련
- (6) 토교저수지 외래종 퇴치 대책 마련

### <대구지방환경청>

- (1) 낙동강 퇴적토 발암물질 검출 보도 관련 대응
- (2) 4대강 지역 습지 보전 관리 철저
- (3) 1,4-다이옥산 관리 기준 설정
- (4) 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기초시설 점검
- (5) 비점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 필요

### <전주지방환경청>

- (1) 용담댐 상류 폐기물매립장 적정 관리 필요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국가, 공공기관의 환경분쟁 교육 저조
- (2) 홍보방법 다양화 및 법정기간 내 사건처리 필요
- (3) 환경분쟁 사건 평가·배상 기준 마련

### <국립환경과학원>

-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2) 유기농업의 수질오염 문제
- (3) 비정규직 처우 개선
- (4) 유해 외래종 연구 관련
- (5) 순환골재 사용 관련
- (6)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 평가 관련

## 처 리 요 구 현 황

(7) 수입단계 유해성 평가 도입

### <국립생물자원관>

- (1) 천적곤충 국산화 필요
- (2) 전통지식 DB 시스템 구축 필요
- (3) 전시관 시설 확충 필요
- (4) BT산업 육성 지원
- (5) 농경지 관리 활성화
- (6) 생물자원 정보 공유 필요
- (7) 외국인 관람객 유치노력 소홀

### <한국환경공단>

- (1) 수질오염방제센터 4대강사업 관련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 철저
- (2) 압수폐기물 관리 부실
- (3)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문제
- (4)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내실화
- (5) 1회용 기저귀 재활용 대책 강구

### <국립공원관리공단>

- (1)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마련
- (2)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 (3)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
- (4) 북한산 탐방문화개선용역 개선
- (5) 대피소 수용인원 부족

## 처 리 요 구 현 황

- (6) 공단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필요
- (7) 국립공원 국유화 필요
- (8) 국립공원 자연훼손 대책 마련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1) 매립가스 CDM 사업 관련
- (2)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분쟁 관련
- (3) 수도권매립지 비산먼지 방지대책 마련
- (4) RDF 시범사업 문제
- (5) 환경에너지 대학원 대학 설립계획 재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1) 환경산업 지원예산 확보 필요
- (2)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관련
- (3) 탄소성적표지제도 활성화
- (4) 친환경마크 차별화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1) 교육용 기자재 확충
- (2) 교육과정 선정 및 운영 관련



## (2) 고용노동부 소관

### 시 정 요 구 현 황

#### < 고용노동부 본부 >

- (1) 직원의 고유업무 관련 외부강의 관리·감독 철저
- (2) 불법과건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3)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4)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 (5) 대한상공회의소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련
- (6) 계좌제 훈련 자비부담 비율 합리적 조정 필요
- (7) 법외 불법단체 적법처리 필요
- (8) 산재예방 관련 예산 확보
- (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의 적법 처리
- (10)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재발생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1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보조출연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영화제작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방안 강구
- (2) 건설현장의 산재발생 하청업체 책임전가
- (3)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대책마련

## 시 정 요 구 현 황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현대자동차 불법과건에 대한 대책 마련
- (2) 아파트건설현장 거푸집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 적절 처리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계좌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관리강화
- (2) 우편원격훈련 부정수급기관 제재강화 필요
- (3)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성희롱예방교육 강화 필요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1) 노사정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 (2)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 < 근로복지공단 >

- (1) 공단의 복지사업 계획수립 철저
- (2) 사업주의 행정소송 보조참가 개선
- (3) 공단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산재승인
- (4)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 관련 인력 충원
- (5) 공단직원 근무기강 해이 근절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건강관리수첩 발급 미흡

## 시 정 요 구 현 황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 취업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 강화 필요
- (2) 장애인기능대회 참가자격 확대 및 상금인상 필요

### < 한국고용정보원 >

- (1) 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 장애인시설 설치에 점검, 감독 강화 필요

## 처 리 요 구 현 황

### < 고용노동부 본부 >

-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 (2) 스마트워크 시대에 맞는 근로기준 제도정비 철저
-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채용실적 미흡 개선
- (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5) 여성고용률 향상 대책 필요
- (6) 산전후휴가급여의 전액 사회부담 방안 마련
- (7) 장애인근로자 저임금 개선대책 실시
- (8) 한국노동연구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 (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10) 최저임금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보

## 처 리 요 구 현 황

### 호 대책 마련

- (11) 한국잡월드 개관준비 철저
- (1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 (13)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14) 은퇴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 (15) ILO 협약 비준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 (16) 열악한 택시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안 마련
- (17)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운영체계정비 필요
- (18) 원격훈련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필요
- (19) 직장보육시설 지원수준 확대 필요
- (20)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관련
- (21) 노동시장의 유연성 대책 강구
- (22) 부당노동행위 적극적 대처 필요
- (23) 필수유지업무제도 유지관련
- (24)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 제고
-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26) 역학조사 방법 개선
- (27) 삼성반도체 근로자 산재 승인
- (28)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처벌 강화
- (29) 산재 입증책임 완화
- (30) 산재판정 제도개선 적극 협조
- (31)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32) 나노물질 사용 실태과악 및 강제적 이행 지침 마련
- (33) 산재예방 사업 추진방식 개선 및 인력 충원

## 처 리 요 구 현 황

- (34) 산재예방 관련 업무의 지방이양 신중
- (35) 석면 안전관리 강화
- (36)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 (37) 영양사를 통한 영양지도
- (38) 임금체불 대책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활동 강화
- (2)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지도 강화
- (3)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가입률 제고
- (4) 임금체불 대책 마련
- (5)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1) 동두천 드림택시 문제 해결방안 강구
-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관리감독 강화
- (3)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4) 외국인근로자 산재감소 대책 마련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1)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2) 훈련기관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3) 근로감독관 정원 확보
- (4)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처 리 요 구 현 황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1)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 (2) 동산의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강구
- (3)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4)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5)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6)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7)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철저
- (8)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1) 광주지역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 (2) 취업박람회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3) 금호타이어 노사관계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4)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5) 역학조사 후속조치 및 산업안전관련 노사협의체 활동 강화
- (6) 임금체불 대책 수립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1) 사회적 기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2) 발레오공조코리아(주) 노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 (3) 사망만인율 감소 대책
- (4)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필요
- (5) 사업장 안전점검 방식 개선 및 재해상황의 정확한 공개

## 처 리 요 구 현 황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1) 노사정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 중앙노동위원회 >

- (1) 공익위원 선정 및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
- (2)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
- (3) 노동위원회 분쟁사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 근로복지공단 >

- (1) 진폐와 관련 최종사업장 적용 문제
-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료를 적용
- (3) 산재의료기관의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강화
- (4) 직업복귀율 상향 및 직업재활급여 집행 강화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6) 부정수급조사 활성화
- (7) 직업성 암 관련 발암물질 확대
- (8)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개선
- (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
- (10) 장애등급판정
- (11)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적극적 지원
- (12) 산재병원 장례식장 선정방식 개선
- (13) 공단직원 처우 개선

## 처 리 요 구 현 황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1)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내실화
- (2) 직업방송 내실화 필요
- (3) 국가자격 시험관리 전문화·내실화 관련
- (4) 한국어능력시험의 관리 철저
- (5) 기능장려 사업 내실화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1) 산업안전보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 (2) 외국인근로자 산재 저감 및 후속 지원
- (3) 나노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4) 서비스업종 및 중소기업 재해 감소 노력 필요
- (5) 역학조사 결과표현 및 실시 방식 개선
- (6) 클린사업장 적정 지원
- (7) 산업재해 통계방식 변경
- (8) 건설업체 본사 안전조직 설치
- (9)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 (10) 인사관리 투명성 확보
- (11) 적정한 정규직 채용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1)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의 내실화 필요



## 처 리 요 구 현 황

### < 한국고용정보원 >

- (1) 고용보험 관련 대국민 온라인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 (1) 교직원의 엄격한 인사관리 필요
- (2) 평가순위가 낮은 캠퍼스의 통·폐합운영 필요
- (3) 고령자 및 여성들의 직업교육 확대 대책 필요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1) 직업훈련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졸업생 관리의 다양화 필요
- (2) 노동행정연수원 원활한 운영 필요

### (3) 기상청 소관

#### 시 정 요 구 현 황

- (1)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불참기관 참석 필요
- (2) 다이얼 부이 서비스 개선
- (3) 성과보고서 왜곡 시정
- (4) 해저지진계 복구

#### 처 리 요 구 현 황

- (1) 지진 관측 및 통보 개선
- (2) 남·북 기상협력 강화
- (3) 특이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 필요
- (4) 백두산 화산 폭발 대비
- (5) 기상청 휴대폰 앱 관련
- (6) IPCC 평가보고서 관련
- (7) 공항 윈드시어(난기류) 탐지장비 확충 필요
- (8)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9) 기상특보 기준 재정립
- (10) 기상부문 R&D관련
- (11) 기상콜센터 예산 확대 필요
- (12) 우박 사전예보 도입
- (13) 기상레이더 자료 통합 운영
- (14) 기상조절 연구 활성화
- (15) 4대강 수문기상 모니터링 관련

## 처 리 요 구 현 황

- (16) 천리안 위성 관련
- (17) 민간 기상산업 진흥
- (18) 폭염 특보 모니터링 실시
- (19) 지진 내진설계 관련
- (20) 기상자원지도 보급
- (21) 기상정보 전달시간 단축
- (22) 국가기상위성센터 인력 부족
- (23) 슈퍼컴 3호기 유지·관리
- (24) 기상감정업 관련자격증 제도 개선
- (25) 기상레이더 국산화 필요
- (26) 공항 저시정경보(안개예보) 선행시간 관련
- (27)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 (28) 우주기상 부문 강화
- (29) 국가기상위성센터 경비시스템 강화
- (30) 라디오존데 장비 확충
- (31) 기상레이더 주파수 관련
- (32) 슈퍼 컴퓨터 내구 연한 기준 필요
- (33) 세계기상기구(WMO) 국가 분담금 미납액 해소

## 나. 대상기관별 시정·처리 요구사항

### (1) 환경부 소관

#### ▶ 환경부 본부 ◀

#### **【시정요구사항】**

##### (1) 폐가전제품의 관리 부실

- ▶ 지자체의 폐가전제품 수거업체 및 폐가전처리업체의 유해물질 불법배출 및 관리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 SH공사 시공 아파트 내부 가구의 기준 부적합

- ▶ SH공사가 시공한 아파트 내부의 가구에 대한 조사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하였으므로, SH공사 시공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3) 대기오염자동측정망(TMS)의 조작으로 인한 신뢰성 저하

- ▶ 최근 2년간 4건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TMS) 조작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기존의 정도검사 및 점검을 통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환경부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측정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

##### (4) 음식물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음폐수의 무단방류

- ▶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서 음식물 폐기물과 음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실시할 것.

## (5)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운영 부실

-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의 운영결과 평가심사 부실, 부적합한 강의 개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6) 공군사격장 인근 토양 및 수질 등에 대한 조사 미흡

- ▶ 공군사격장 인근 지역의 암발병률이 높고, 어폐류의 폐사사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오염조사 등이 원활하게 실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방부 등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한 조치를 실시할 것.

## (7) 수계관리기금사업 중 토지매수사업 등으로 인한 문제

- ▶ 수계관리기금으로 수행하는 토지매수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및 땅투기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토지매수사업과 주민지원 및 환경개선비용 간의 재원 재배분 등 수질개선효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8) 수계관리위원회의 인적 구성 변화 필요

- ▶ 수계관리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중앙관서 직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며, 한강유역청에서 전담하는 사무국 인적구성이 대통령령 규정에 배치되는바, 이해관련자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9) 불법 밀렵 밀거래 확대 단속 강화

- ▶ 불법 포획된 멸종위기종 구렁이의 불법 밀렵 밀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나 한강청의 밀렵단속인원이 1명에 불과하여 단속이

어렵고, 적발 후 벌금 등이 적어 단속의 실효성이 저조한바, 향후 대책을 마련할 것.

#### (10) 수도권매립지공사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단계 공사시 특혜 발생

- ▷ 수도권 매립지 공사 하수슬러지처리시설 2단계 사업 추진 시 특정회사에 혜택을 주기 위하여 공모일정 조정 및 허위실적 인정 등 불공정 계약을 한바,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것.

#### (11) 대구 파동 4차선 순환도로 공사현장 소음·분진 피해

- ▷ 대구 수성구 파동 4차선순환도로 공사현장에서 소음·분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주민의 분쟁조정 신청 시 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감시 감독을 강화할 것.

#### (12)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업무 이관으로 인한 국고유출 문제

- ▷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하면서 부적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였는데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부 업무의 수행주체를 공공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고가 유출되는 결과로 나타난 바, 환경공단에 이를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 (13)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등으로 인한 부실

- ▷ 환경영향평가 대행 산정비용규정을 지키지 않고 저가로 발주함으로써 부실한 영향평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저가발주에 대한 감시 및 직접 발주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14) 성남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효과 미흡 및 사업방식 변경

- ▷ 성남 하수처리장의 악취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였으나 개선효과가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신규 뿐 아니라 기존 하수처리장에 대한 국고보조방안을 마련하며, 분류식으로 하수처리장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것.

### (15) 가야산 골프장 건설 부적정

- ▷ 국립공원인 가야산에 골프장 건설이 진행중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권리 뿐 아니라 공익, 주민의 감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것.

### (16)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실적 저조

- ▷ 수도권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물질 삭감계획 대비 삭감실적이 저조한 점이 있으므로 미흡한 점을 집중 보강하고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

### (17) 수도권 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 ▷ 수도권 서부(수원~광명)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하여 생태계 조사가 1차 조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겨울철에 실

시되었으며, 금개구리,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증언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습지 생태계 평가가 전무하고, 주민 반대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걱정 조치를 검토할 것.

## (18) 환경영향평가 저가발주 관행 개선

- ▷ 한전의 송전사업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발주금액이 환경부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실평가 우려가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발주 컨설팅, 환경청 등 제3자에 의한 발주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지하철역의 석면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

- ▷ 전국 특히,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석면이 검출되는 빈도가 높고 석면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을 철저히 추진할 것.

#### (2) 목질판상제품 등의 발암물질 관리 대책 필요

- ▷ 목질판상제품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관리기준과 규제가 없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인 정비 방안을 강구할 것.

#### (3) 나노물질 안전관리 대책 마련

- ▷ 나노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안전관리기준이나 안전관리방안이 미흡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



체적 손실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범부처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나노물질 관리 체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

#### (4)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 필요

- ▷ 유전자유전자변형생물체는 야생에 퍼질 경우 생물다양성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높고, 인체에도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입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것.

#### (5)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의 효과성 확대

- ▷ 최근 10년간 한강수계기금의 BOD 및 COD 등 수질개선실적이 적고 하수도보급 등 환경기초시설 지원이 미흡하며, 오염물질 배출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수변구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 (6) 빗물오염 저감시설 확대 필요

- ▷ 초기우수가 도로 등에 있는 비점오염물질과 함께 하천에 유입됨으로써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는바, 비점오염원의 철저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7) 리튬 2차전지 재활용 기술 상용화 확산 필요

- ▷ 리튬 2차전지의 재활용 기술의 상용화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늦은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

## **(8)물관리 정책의 일원화 방안 마련**

- ▷ 물관리에 대하여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바,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9) 녹색생활 운동의 실천적 방향으로 전환**

- ▷ 녹색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린스타트 운동이 기념행사, 캠페인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효과에 의문이 있으므로 규제나 인센티브 등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10) 종이박스에 비닐테이프 활용 축소**

- ▷ 대규모 마트에서 사용하는 종이박스에 비닐테이프를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종이테이프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

## **(11) 환경과목 교사의 환경전공자 확대 필요**

- ▷ 중고등학교의 환경과목 교사1,821명 중 환경교육이나 환경 관련 학과를 전공한 전공자의 비율은 23.4%에 불과한바, 국립환경개발원 뿐 아니라 교육부와의 연계 등 통해 범정부적인 환경교육 진흥 대책을 마련할 것.

## **(12) PVC소재의 신분증을 친환경소재로 개선 필요**

- ▷ 공무원증 등 신분증에 사용되는 PVC소재의 환경영향을 감안할 때 이미 개발되어 있는 친환경소재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바,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3) 국립공원 제도개선

- ▷ 국립공원 지정시 나타나는 각종 규제 등으로 국립공원이 확산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립공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산권행사의 제한 완화 등 국립공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국립공원계획 중 15년 이상된 계획을 정리하고 추진할 계획을 빨리 추진하는 등 사업을 조정할 것.

### (14) 폐식용유 관리 감독 강화

- ▷ 폐식용유에 대한 정확한 집계가 현재 존재하지 않고, 폐식용유의 오염정화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수 있는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는 등 산업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5) 생태계교란종 및 외래종의 관리 감시 철저

- ▷ 생태계교란종 및 외래종과 관련된 법령이 부처별로 산재하여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계교란종 지정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보강 및 입법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

### (16) 음폐수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

- ▷ 음식물쓰레기 및 음폐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비용이 18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상황이므로 장기적인 환경교육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운동을 환경부가 선도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

### (17) 석면문제에 대한 실태 공개 등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 석면광산 등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를 환경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실태를 공개하고 제도적으로 출입금지 등의 조치와 향후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18) 환경시설관리공사의 전직 환경부 공무원 취직률 축소

- ▷ 환경시설관리공사는 환경부 소속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임에도 전직 환경부 공무원의 취직률이 높으므로 향후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19) 남한강 섬의 공군사격장 위치 이전 필요

- ▷ 여주는 한강의 상수원 지역으로 그 지역에 공군사격장을 운영하는 것은 소음피해, 농가주변 오폐수로 인한 인명피해, 중금속 오염 등의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높으므로 국방부와 협의하여 조속한 위치 이전 방안을 강구할 것.

### (20) 해안사구 파괴 방지

- ▷ 해안사구의 파괴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해안사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

### (21) 버스 실내 공기질 대책 마련

- ▷ 신규 버스의 실내 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단일화 방안을 강구할 것.

## (22) 풍력발전소 소음 및 저주파음 관련 피해 대책

- ▷ 풍력발전소 소음과 저주파음으로 인체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음과 저주파음 측정기준 및 영향조사를 실시할 것.

## (23) 폐금속광산 조사 철저 및 방제의 환경부 추진 필요

- ▷ 폐금속광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식경제부(광해방지사업단) 등과 적극 협력하여 광해방지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24) 층간소음 대책 마련

- ▷ 층간소음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할 것.

## (25) 새만금 수질 관리 대책

- ▷ 새만금 지역의 매립토 운반방법에 따라 사업규모 등이 변경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고, 왕궁 축산단지와 같은 오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질을 관리하도록 할 것.
- ▷ 왕궁축산단지 이전 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이 33억원으로 매우 적으므로 예산을 확대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26) 녹색가정만들기 사업 주력 필요

- ▷ 현재 시행중인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의 예산반영이 미흡하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탄소포인트제와 같은 캠페인성 사업

보다는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에 주력하도록 할 것.

### (27) 건설폐기물 분리 선별

- ▷ 건설폐기물에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이 섞여 있어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건설폐기물 분리 선별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8)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 관련 지자체간 갈등 방지방안 마련

- ▷ 수도권매립지 면허관련 지자체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노력하고,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29) 환경산업 활성화

- ▷ 국내 환경산업이 외국과 격차가 크므로 환경산업에 주력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 환경산업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경산업기술원 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환경산업기술원의 수출상담 수가 적은 것은 문제이므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0)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재검토

- ▷ 일회용컵 보증금 폐지 이후 사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1) 노로바이러스 제도 강화

- ▷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노로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비할 것.

### (32) 환경감시단의 인력조정

- ▷ 환경감시단의 경우 지방은 인력이 부족하나 본부는 인력이 넘치고 있으므로 조정하도록 할 것.

### (33) 노후 수도관 교체

- ▷ 노후 수도관 교체를 통하여 정수기를 쓰는 비용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빨리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도록 노력할 것.

### (34) 생물다양성 협약 의정서 이행을 위한 제반 노력 경주

- ▷ 생물다양성협약 ABS의정서 채택과 관련하여 기후변화 전문가의 발굴 등의 노력을 경주하며, 생물자원의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자료와 환경부 자료를 일치시키고, 세관의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35)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마련

- ▷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환경부와 지경부에서 실시하는 등록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국내에도 신화학물질수입과 관련한 국내법 제도를 마련할 것.

### (36) 전자파 및 생활공해 관리 필요

- ▷ 전자파와 생활공해 관리와 관련하는 타 부처와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7) 동호안 매립시설 대책 강구

- ▷ 동호안 매립시설과 관련하여 두 기업이 공탁금을 내고 보강하고, 폐기물 오염도 검사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8) 퇴적물 규제기준 마련

- ▷ 퇴적물의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

### (39)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변경 필요

-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소극적 정책을 추진하여 전문성 부족과 경직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것.
- ▷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지자체, 국민 등 모든 주체의 적응 활동을 위하여 노력할 것.

### (40) 화학물질 위해·안전관리 강화 필요

- ▷ 유해화학물질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화학물질 위해·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것.



#### (41) 음용지하수 방사성 물질 관리대책 수립

- ▷ 일부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이 검출되어 발암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을 금지하며, 지방상수도 보급 등의 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

#### (42) 실내 라돈 안전관리 방안 마련

- ▷ 실내 라돈농도의 기준은 있으나 권고기준으로 법적 규제수단이 없으므로, 실내 라돈에 대한 유지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공 시설의 시설별 특성에 맞는 라돈 저감계획을 수립하며, 일반주택에 대한 라돈 조치기준을 마련할 것.

#### (43) 국립공원 국유화방안 수립 필요

- ▷ 국립공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행사제약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립공원 국유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등의 계획을 마련할 것.

#### (44) 구제역 지하수 검사 철저

- ▷ 환경부의 살처분 가축매몰지역 마을 지하수오염도 조사현황에 따르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비율이 높으므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45)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 감면조치 미흡

-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및 단수조치 유예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등 노력이 미흡한바, 인센티브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

#### (46) 현대오일뱅크 벙커C유 유출사고

- ▷ 충남 대산항에서 현대오일뱅크 벙커C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현대오일뱅크 측은 성의있는 입장을 마련하고, 피해 어민들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할 것.

#### (47) RDF 사업의 사업성 과다 예측

- ▷ RDF 사업의 사업성이 과다하게 평가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치할 것.

#### (48) 유해야생동물 대비 순환수렵장 활성화

- ▷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큰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도 환경부가 직접 순환 수렵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49)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관련

-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배출자의 음폐수 무단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고형물질과 음폐수를 분리수거하는 방안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50) 조류독감 매몰 지역 지방상수도 보급 지연

- ▷ 조류독감 매몰지역에 지원하기로 한 지방상수도 시설 설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강원도, 충청도, 전라북도 등 일부 지자체는 상수도 시설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방상수도 보급을 조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

#### (51) 지방자치단체 상징생물 지정사업 홍보 강화 필요

- ▶ 지역적 특색에 맞는 상징종의 관리와 활용은 지역경제 부흥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외래종이나 위해동물 등을 상징종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지자체 상징종 선정 시 고유종을 사용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할 것.

#### (52) 하수처리장 운영상태 점검

- ▶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70% 이하로 운영되는 하수처리장은 전체 30%이고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11%에 달하여 전체 40% 이상의 하수처리장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하수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 (53)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제반 지적사항

- ▶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자연습지·수생태계·모래톱 훼손 등 환경파괴 우려 및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크므로 대규모 보 설치와 과도한 준설을 재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 및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수질개선효과도 존재한다는 점 등 사업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문제제기에 대해 관련 자료의 투명

한 공개, 적극적인 홍보와 대처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

- ▷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치수사업으로만 접근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보다 항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 ▷ 4대강 사업의 문화재지표조사 중 폐기물이 검출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미흡한 것이며, 검출 후에도 환경부의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 낙동강 유역의 폐기물 문제와 관련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짧고 평가 시에 과거의 자료를 사용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반적으로 졸속·부실 추진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사후점검의 강화,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철저한 실시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총인 증가 및 수온 상승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사업 추진 시 포크레인 등의 수중 작업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주의를 기할 것.
- ▷ 4대강 사업 등으로 신진교 등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배추값이 폭등하였다는 지적은 바람직하지 않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정부 사업이 추진계획된 적이 있었으며, 과거의 계획보다 축소된 비용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 4대강 사업에 추진되는 스마트리버 체계 내의 로봇물고기 기술의 비용 대비 효과분석을 철저히 할 것.
- ▷ 4대강 사업은 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물부족을 겪고 있는 영산강에 대한 투자는 그에 비해 더욱 미흡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영산강 지역의 국고지원율이 낮아 지자체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원을 상향 등의 노력을 우선 기울일 것.
- ▷ 영산강 지역은 깨끗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와 준설이 필요가 없고, 하구둑의 오염이 심해 하구둑 준설을 우선 실시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4대강과 관련없는 환경개선예산의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친수공간 이용에 있어 운동장 등의 조성 후 실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습지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사업 등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멸종위기종인 단양쭈박쟁이가 훼손되는 현상이 발견된바 4대강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 4대강 수계기금으로 지방비를 지원하여 총인처리시설 등 4대강 사업비에 투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발표할 것.
- ▷ 낙동강 환경영향평가지 습지 훼손 면적, 한강 환경영향평가지 습지면적을 물밀의 습지를 빼고 산출하는 등 축소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4대강 사업으로 배추값이 폭락하거나 유기농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대운하사업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 국립생태원의 수변생태관리 방안연구 등을 감안할 때 국토부의 수변생태관광 36경 계획의 생태계 배려가 확보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역할을 확대할 것.

## ▶ 한강유역환경청 ◀

### 【시정요구사항】

#### (1) 주민지원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문제

- ▷ 주민지원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에 민간단체 관계자, 광역시 공무원 등이 포함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예산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2)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 위촉 문제

- ▶ 자연환경보존명예지도원에 대한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적정한 위촉·지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시정할 것.

## (3)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문제

- ▶ 2007~2009년도 주민지원 사업비 분배시 분배 기준인 대상 지역 인구수를 과다 산정하여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이 왜곡되었는데, 공평한 지원금 분배를 위해 정확한 인구수 집계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 민간단체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 ▶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민간단체 지원금을 받아온 한강지킴이 운동본부 간부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사법처리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지원대상 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할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팔당 유기농 단지 문제

- ▶ 실제 유기농면적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나 국토해양부에서 유기농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해 과장 홍보하고 있으며,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가 경기도 팔당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상황이고, 지난 정부에서 유기농을 정책적으로 육성한 바 있으므로 유기농 단지 철거를 재검토할 것.

- ▷ 하천 부지 내 유기농 경작은 수질 오염을 가져오므로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천부지 내 경작지 지원은 시정되어야 하며, 유기농 재배가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관행 농업과 마찬가지로 오해가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

## (2) 총인처리시설에 수계기금을 투입하는 문제

- ▷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수계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은 2015년을 기준으로 수질목표를 설정하였는데 보 건설 완료시기인 2012년에 맞추어 서둘러 수계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총인처리시설에 대한 수계기금 투입을 재검토할 것.

## (3)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 4대강 사업 홍보 문제

- ▷ 4대강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인공습지 조성계획, 하천수위 변동간의 관계, 토지기반, 지하수 등에 대한 부실 검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기간 중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청장이 홍보·교육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4) 4대강 사업 목적과 배치되는 시설 최소화

- ▷ 4대강 사업에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 설치 등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상수원 보호와 상충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바, 4대강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5) 단양쑥부쟁이 이식 성공 홍보 확대

- ▷ 단양쑥부쟁이 이식 성공률이 96.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것.

#### (6) 유역단위 하수도 정비 계획 필요

- ▷ 하수처리장 가동률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므로 국가하수도정비계획과 별도로 유역단위의 하수도 정비계획을 세우는 방안을 강구할 것.

#### (7) 고속도로 주변 비점 오염원에 대한 대책

- ▷ 수도권 상수원 인근 고속도로는 상수원의 비점오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비점저감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비점오염원 저감대책을 시행할 것.

## (8) 수질TMS 관리 및 정책 보완 필요

- ▷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오염원을 관리하는 수질 TMS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계 고장 등으로 측정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 공단폐수 처리시설 가동률 제고

- ▷ 경기도 파주, 문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4개 공단의 경우 폐수처리 시설 가동률이 저조하므로 가동률이 낮은 시설에 대하여는 기존 배출시설과의 연계 등을 통해 가동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 (10) 취수 시설 등 식수원 보호 대책 필요

- ▷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2009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분석 결과, 48개 취수시설 중 23개 시설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는바, 상수원 보호지역 미지정 취수원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 경기 지역에서 하수처리장이 확보되지 않아 미처리 방류되고 있는 하수가 연간 3만톤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보건과 위생 보호 및 식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1) 한강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문제

- ▷ 한강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과 보완서의 습지면적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고, 습지 현지조사 없이 4~7년 전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훼손되는 습지 면적도 육상부를 경계로 하여 파악하여 실제보다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 낙동강유역환경청 ◀

### 【시정요구사항】

#### (1)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준 재검토

▷ 2009년도 주민지원 사업비 배분시 경남 지역에서 배분 기준인 지원 대상자수를 과다 산정하여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공평한 지원금 배분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 환경교육·홍보단 위촉 강사 관리 기준 강화

▷ 환경교육·홍보단 위촉 강사 중 4대강 살리기 반대단체 소속 비중이 높으며, 강의 실적이 없는 강사도 재위촉 하는 등 강사 위촉 관리가 허술하므로 강사 선정기준을 강화할 것.

#### (3)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사후점검 미비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9년 6월 환경부의 감사결과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사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낙동강 수질 보호를 위해 실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것.

#### (4)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 처분

-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법 위반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례 분석 결과 사업자의 의견서 제출시 이를 모두 과징금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억지력이 있는 엄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5) 우포늪에 대한 체계적 관리

- ▷ 우포늪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 일부 농로가 미포장 되어 주민 및 관광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등 관리가 미비한 점이 보이는데,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탐방로 및 안내판 등 시설을 환경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연환경 감시원 채용과 관리를 일원화 하는 등 전반적 관리를 강화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낙동강 수계기금 집행의 수질개선 효과성 제고

- ▷ 낙동강 수계기금 1조 1,320억원의 집행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주요지점 수질은 3급수 정도로 수질개선 효과가 미비한바, 개발제한 토지보다는 오염발생 우려가 높은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의 지역을 우선 매수하도록 하고, 토지매수보다는 하수도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집중하도록 하며, 매수토지의 생태복원 투자 비율을 높이는 등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 ▷ 토지매수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낙동강 수계기금 주민지원 사업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실질적 주민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2) 4대강 홍보 관련

- ▷ 4대강과 관련하여 모래의 자정작용을 무시하고 지난 40년간 수질 개선을 위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처럼 홍보한 것은 잘못으로 시정할 것.

## (3) 4대강 공구 환경영향평가 미흡

- ▷ 4대강 사업구간에서 불법폐기물이 발견되는 등 토양 침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낙동강유역 환경습지 훼손면적 축소 등 자료 제출 미흡 문제가 있으므로, 공사 추진 이전에 철저한 평가를 할 것.
- ▷ 부산권 4공구 준설량 축소 등 환경영향평가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하고 사후적으로 문제를 조치하는 식의 사업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할 것.
-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 낙동강(하류)하천기 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서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보완되지 않았고 최종 협의까지 진행되었는바, 환경성 평가의 미흡을 보완하도록 할 것.

#### (4) 수질오염총량제 재검토 필요

-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변동이 생기고 있으므로, 목표 수질을 재설정하고, 4대강 사업과 수질오염총량제 간의 연계성을 검토할 것.

#### (5) 3공구 맹꽁이 서식지 훼손 최소화 대책 마련

- ▷ 낙동강 3공구에서 환경영향평가지 발견하지 못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고, 멸종위기종 포획·방사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맹꽁이 집단 폐사가 발생하였는바, 향후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 최소화를 위해 안정적 대책을 마련할 것.

#### (6) 경남 지역 상수도 관리 부실 해결 대책 마련

- ▷ 경남 지역 47개 취수시설 중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19개 취수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강구할 것.
- ▷ 하수처리장이 확보되지 않아 하수를 미처리 방류하고 있는 통영, 거창 등 지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과 위생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7) 4대강 사업 공구 불법폐기물 발견 관련

- ▷ 매리취수장, 칠곡 인근 낙동강변 등 취수원 주변 불법 매립 폐기

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처럼 언론 보도 되었는데 사실 여부에 대해 굴착현장을 확인하고, 폐기물 매립 등이 취수장 수질에 영향이 없다고 한 부산시 및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할 것.

- ▷ 8,9 공구 내 불법폐기물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불철저했던 문제이며, 하류 매립취수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실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
- ▷ 매립 폐기물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도 4대강 사업의 부수적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세부적 조사를 하고, 환경감시요원 운영 확대 등 감시 보강 위한 지원을 요청할 것.
- ▷ 매립현장 시료채취결과 중금속 과다 검출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4대강 사업 이전에 불법매립도에 대해 전수 정밀조사를 실시할 것.

#### (8)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 보완

- ▷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석면피해신고센터’는 석면피해 관련 전문인력 없이 환경청 소속 직원 1명이 전화접수만 하고 있는 등 운영이 미비한 상태이며, 최근 3년간 신고건수가 2건에 불과하여 석면피해 접수·상담 실적이 저조하므로,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할 것.
- ▷ 2011년 1월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에 따라 ‘석면피해신고센터

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므로, 새로이 바뀌게 될 피해구제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도록 할 것.

#### (9) 환경감시단 인원 충원 필요

- ▶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법령 반복위반 업체 비율이 높은 수준임에도 환경감시단 정원 14인 중 현원이 10명에 불과하여 감시업무 부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감시단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감시단 활동을 내실화 할 것.

#### (10) 낙동강 살리기 사업 및 오염원 저감노력

- ▶ 낙동강은 부산·경남지역의 주요 식수원이나 해마다 갈수기에 수질 악화가 가중되고, 상류지역에 대규모 산업시설이 위치하는 등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한 상태인바,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낙동강 유입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할 것.
- ▶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준설 시작 이후 낙동강 부유물질 증가 등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해명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할 것.

#### (11) 정수장 앞 폐기물 방치 등 현장감시 강화 필요

- ▶ 김해 삼계 정수장 인근에 적치된 불법 폐기물을 7년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현장 감시 임무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것.



## (1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

-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결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미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3)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 강화

-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하여 협의 및 승인 없이 사전 공사를 하였다가 고발조치된 사업장(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3개소)에 대해 후속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14) 낙동강 퇴적토 발암물질 검출 보도 관련 대응

- ▶ 낙동강 퇴적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이 아닌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 영산강유역환경청 ◀

### 【시정요구사항】

#### (1)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문제

- ▶ 영산강의 4대강 사업 사전환경성검토시 습지면적 및 준설로 훼손될 습지면적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요청 없이 협의하였고,

환경적 중요성이 있는 모래톱의 양 및 훼손면적 조사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는바, 향후 환경성평가 협의시 이러한 부실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필요

- ▶ 영산강유역청의 밀렵·밀거래 적발건수 증가( '07년 대비 7배 이상 증가)와 관련하여 단속정보 확보가 어렵고 벌칙이 소액의 벌금형 위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인력 확충, 사법경찰관 부여, 지역 주민 참여, 밀렵도구 제작 금지 강화 및 판매금지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2) 영산강 친수공간 및 습지조성 확대

- ▶ 보존가치 높은 하천부지를 사용도 저조한 둔치 운동장으로 조성(영산강 하천부지 내 덕흥동, 마륙동 둔치 운동장)하는 것은 제고되어야 하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습지 조성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

### (3)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하수 수질 개선 대책 마련

- ▶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지하수 수질보전 및 수질정화, 개선방안 등 수질 기준을 초과한 지하수에 대한 환경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 (4) 비점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 필요

- ▶ 비점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14개 사업장이 모두 자율점검을 실시한 곳으로 확인되어 자율점검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5) 광양 동호안 제방붕괴 사고복구 및 후속대책 필요

- ▶ 작년 8월 광양시 소재 폐기물 매립장 제방 붕괴로 인한 침출수 유출 이후 복구방안, 매립장 육상 이전 등에 대해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매립장 이전, 침출수 해결 등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

### ▶ 금강유역환경청 ◀

#### 【시정요구사항】

##### (1) 환경영향평가 부실 협의 문제

- ▶ 금강의 4대강 사업 사전환경성검토시 습지면적 및 준설로 훼손될 습지면적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보완요청 없이 협의하였고, 환경적 중요성이 있는 모래톱에 대해서도 양 및 훼손면적 조사없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금강하구 수질개선 대책 마련

- ▶ 금강하구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천 내 농경지 정리, 습지·생태하천 조성 등을 통해 금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저감하여 금강하구독의 철거 없이 수질 개선 할 수 있도록 할 것.

### (2) 대청호 유람선 운항 계획 문제

- ▶ 대청호 연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청호 유람선 운항 계획은 수질 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제고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에게는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강화하도록 할 것.

### (3) 유등천 2지구 보전 대책 마련

- ▶ 유등천 2지구는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자연하천 구간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사업계획 변경 및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 (4) 상수도 보호·관리 대책

- ▶ 대전 동구, 충북 청원, 보은 지역에 연간 1만 8,000톤의 하수가 미처리되어 대전시 등의 식수원인 대청호로 방류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의 보건과 위생 보호 및 식수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수도권대기환경청 ◀

### 【시정요구사항】

#### (1) 저공해 자동차 구매의무 제도 부진 대책

- ▶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 제도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홍보 강화, 인센티브 강화, 저공해 자동차 구매 여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에 반영 등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친환경 도료 사용 실태 조사 점검

- ▶ ‘2010년도 제2차 환경 친화형 도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존을 발생시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초과 함유 우려가 있는 도료가 시판되고 있는바, 계속적 기준 강화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 기술 개발 등을 고려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대기오염 관리대책 특성화

- ▶ 인구가 많은 수원, 성남 등에는 도시대기측정망은 있으나 국가대기 측정망이 없는 등, 경기도 내 대기오염이 지역별, 인구별 편차가 있음에도 광역적 저감대책이 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오염관리 대책 수립시 지역과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특성화하도록 할 것.

## (2)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

- ▷ 서울의 경우 세계 주요도시들에 비해 대기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세먼지 농도 목표가 선진국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바, 휘발성 유기화합물,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초미세먼지 관리

- ▷ 초미세먼지 증가가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사망률이 상승하고 있는바, 중국에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

## (4)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 강화

- ▷ 자동차 공회전 제한과 관련하여 경기도 점검 실적은 35만건, 적발건수는 77건 정도로 미비한바 공회전 제한 장치 부착 등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5) 자동차 배출저감 장치 사후 재활용 현황 점검

- ▷ 경유자동차 배출 저감장치 매각시 폐촉매를 분리하여 수출하고 있는바, 폐촉매 장치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여 폐금속 자원순환 효율성을 높일 것.

## ▶ 원주지방환경청 ◀

### 【시정요구사항】

#### (1) 4대강 공구 단양쑥부쟁이 서식지에 대한 걱정 조치

- ▷ 한강 13공구 환경영향평가에서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누락되고 서식지 보전을 위한 걱정 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바, 멸종위기종 증식기관으로의 이전 등 대체서식지 조성을 위한 조치 마련할 것.
- ▷ 불법공사로 단양쑥부쟁이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감시감독 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중지 등 걱정 조치를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중 4대강 사업 홍보 문제

- ▷ 원주지방환경청장이 4대강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중에 강연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교육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2) 하수처리장 운영의 계획 및 설계 검증 강화

- ▷ 관내 전체 50개 하수처리장 중 26개 정도가 가동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태백 하수처리장의 경우 가동률이 110%로

초과하고 있음. 이러한 유입량 과소와 과다는 하수처리의 질이 저하시킬 수 있는바, 비용 낭비와 수질오염 악화를 막기 위해 하수처리장 계획 및 설계 검증을 철저히 할 것.

### (3) 연안침식 및 파괴 대책 수립

- ▷ 강원도 해안가의 경우 난개발로 연안 파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안침식 모니터링 결과 D등급이 8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규정이 미비한바, 대책을 마련할 것.

### (4) 폐금속 광산 주변 토양오염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대책지역 지정 유도

- ▷ 현재 폐금속 광산 주변지역 환경오염영향조사를 통해 토양오염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향후 토양오염대책지역으로 지정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환경청 차원에서 유도책을 마련할 것.

### (5) 도암호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마련

- ▷ 작년 도암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76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효과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고 수질정화시설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타부처와의 협조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 (6) 토교저수지 외래종 퇴치 대책 마련

- ▷ 철원군 비무장지대 내 토교저수지는 1973년 생태계교란 외래종 배스가 방류된 곳으로 이에 대한 파악하고, 시급히 퇴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 대구지방환경청 ◀

#### 【처리요구사항】

#### (1) 낙동강 퇴적토 발암물질 검출 보도 관련 대응

- ▷ 낙동강 퇴적토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는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이 아닌 미국 해양대기청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할 가능성이 있는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2) 4대강 지역 습지 보전 관리 철저

- ▷ 4대강 사업 관련하여 천연습지를 인공습지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습지훼손 비율이 축소(54.1% → 28.1%)되고 과소추정되고 있으며, 각종 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추진시 습지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3) 1,4-다이옥산 관리 기준 설정

- ▷ ‘1,4-다이옥산 가이드라인’ 설정 및 ‘배출량 제한 협약’ 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1,4-다이옥산이 검출되고 있는 바, 법적 1,4-다이옥산 배출허용 기준 설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4) 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기초시설 점검

- ▷ 4대강 수질 제고를 위해 물 재이용 처리관련 환경기초시설 점검이 필요하며, 서류심사 이외에 실사 점검까지 실시할 것.

### (5) 비점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실태 점검 필요

- ▷ 비점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10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모두 자율점검을 실시한 곳으로 확인되어 자율점검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자율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 ▶ 전주지방환경청 ◀

### 【시정요구사항】

#### (1)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미비

- ▷ 전주시는 종합 Recycling-Town 조성사업의 입지를 선정하면서 지역주민 및 주변 자치단체와의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서에서 하수슬러지 발생예측량을 누락하는 등 위법성이 보이는바, 시정조치할 것.

## (2) 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미통보 재발 방지

- ▷ 2009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주지방환경청이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미통보 하여 미부과 된 사례가 발견되었는바, 향후 대상 사업 선정 및 통보에 있어 누락 사례 없도록 노력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용담댐 상류 폐기물매립장 적정 관리 필요

- ▷ 용담댐 상류 지점의 위생매립장 지역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수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바, 수질 및 지역 주민 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용담댐 인근에 적치된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 해결 노력할 것.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 【처리요구사항】

#### (1) 국가, 공공기관의 환경분쟁 교육 저조

- ▶ 국가, 공공기관의 환경분쟁으로 인한 소모적 경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예방교육 실적이 저조하므로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순회예방 교육’ 등 환경분쟁 사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2) 홍보방법 다양화 및 법정기간 내 사건처리 필요

-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법원, 검찰청 등 분쟁 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분쟁조정 직접적인 수요자에 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며, 법정처리기간인 270일 이내에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3) 환경분쟁 사건 평가·배상 기준 마련

- ▶ 환경분쟁 사건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및 배상기준이 미흡한바, 새로운 환경피해에 대한 평가방법 및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

### 【시정요구사항】

#### (1) 황사연구단 법적근거 마련

- ▶ 국립환경과학원이 운영 중인 황사연구단의 법적근거가 미비한바, 시행규칙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 생명윤리심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생명윤리 전공자를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참여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참가·탈퇴 절차, 생체시료의 보관 조건과 시간 및 사용처 등이 표준 참가동의서 양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조치 할 것.

#### (2) 유기농업의 수질오염 문제

- ▶ 팔당 유역의 유기농 농업이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유기농업 지역의 수질이 타 농업지역에 비해 좋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바, 정확한 자료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

### (3) 비정규직 처우 개선

- ▷ 비정규직 연구원의 잦은 이직으로 연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바, 과학원 연구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개선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4) 유해 외래종 연구 관련

- ▷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유해 외래종에 대한 연구 강화가 필요한바, 농민들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가 인정된 유해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 (5) 순환골재 사용 관련

- ▷ 순환골재의 사용 과정에서 물과 접촉시 유해물질의 발생위험이 제기되었는바, 순환골재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및 관리를 지속 수행할 것.

### (6) 실내공기질 측정대행기관 평가 관련

- ▷ 과학원의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분석기관이 환경부에서 측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자사홈페이지에 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기관의 평가 및 판정 관리를 엄격하게 수행하도록 할 것.

## (7) 수입단계 유해성 평가 도입

- ▷ 사향쥐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결과로 인해 농가에서 키우던 사향쥐가 대규모로 버려져 오히려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었는바, 수입단계에서부터 유해성 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 국립생물자원관 ◀

#### 【시정요구사항】

##### (1) 생물자원 국외반출 대책 마련

- ▷ 우리나라 생물자원이 해외에 반출되어 역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미발굴된 생물종이 7만 여종에 달하고 있는바, 해외로 반출된 생물자원을 환수하고 국내 고유 생물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생물주권확보 대책을 강구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천적곤충 국산화 필요

- ▷ 병충해 방제용 천적곤충 중 대부분이 수입된 외래종으로 외국 곤충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바, 외국종 수입비용을 줄이고 자생 천적곤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2) 전통지식 DB 시스템 구축 필요

- ▷ 전통지식을 이용한 신약 개발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바, 해외특허에 의한 전통지식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통지식 DB 시스템 구축 등 전통지식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3) 전시관 시설 확충 필요

- ▷ 생물자원관의 관람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험학습실,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므로 전시시설 및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 BT산업 육성 지원

- ▷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BT산업 육성 지원 실적이 미흡한바,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자원관의 BT산업 지원 기능을 기업 등에 적극 홍보할 것.

## (5) 농경지 관리 활성화

- ▷ 농경지는 식량자원의 문제 뿐 아니라 생물종의 다양성 차원에서도 중요한 공간인바, 특히 조류 개체군의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농경지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

## (6) 생물자원 정보 공유 필요

- ▷ 국가연구사업 등으로 확보된 생물자원의 확보 및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바, 생물자원 정보를 종합적으



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통합정보 체계 구축방안을 강구할 것.

## (7) 외국인 관람객 유치노력 소홀

- ▷ 외국인 방문객이 전체 관람객의 약 0.1%에 불과한바, 외국인 관람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영상, 서적 및 전시물에 대한 브로셔를 영문으로 제작·배포하고 영어 전문전시해설사를 활용하며,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준비하는 등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 한국환경공단 ◀

### 【시정요구사항】

#### (1)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사업 추진 내실화

- ▷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사업 진행 과정에서 추가 오염이 발견되어 오염정화 비용이 당초 추정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정확하고 신속한 정화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굴뚝 TMS 관리 부실

- ▷ 굴뚝 TMS 조작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 최근 굴뚝 TMS 조작 사건이 적발되는 등 대기환경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바, 대기오염총량제, 배출권거래제도 등의 기본

인프라인 굴뚝 TMS 점검 시스템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수질오염방제센터 4대강사업 관련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 철저

- ▷ 수질오염방제센터에서는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오염 감시, 예방 및 방제 업무를 철저히 할 것.

### (2) 압수폐기물 관리 부실

- ▷ 사행성게임기 등 압수폐기물의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불법유통사례가 적발되고 있는바, 창고 내 CCTV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문제

- ▷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사전에 다양한 형태의 배출권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4)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내실화

-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상류 및 지하수 수질과 수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바, 하천복원 완료 후 사후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 동시에 동 사업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기술자문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5) 1회용 기저귀 재활용 대책 강구

- ▷ 1회용 기저귀의 펄프와 합성수지 등은 재활용의 가치가 충분함에도 전량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는바, 해외 추진사례를 고려하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 기반구축에 노력할 것.

### ▶ 국립공원관리공단 ◀

#### 【시정요구사항】

#### (1) 국립공원 내 폐광산 오염 저감대책 마련

- ▷ 오대산 국립공원 내 송천광산의 방치된 광미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광미 처리 주체인 광해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 (2)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문제

- ▷ 과거 주민 반대로 무효화되었던 가야산 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는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할 것.

#### (3) 헬기 관리 부실

- ▷ 국립공원이 보유하고 있는 카모프 헬기의 수리비가 과다하고 가동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사고 발생률 및 수리비 과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산불 피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4) 인사부정 및 하위직 적체현상 개선

- ▷ 신규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내부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할 것.
- ▷ 입사 후 20년 동안 한차례도 진급하지 못한 4명의 직원이 있는 등 하위직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탐방객 안전관리 대책 마련

- ▷ 탐방객 사망자 수가 북한산 국립공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국립공원 내의 케이블카 설치 문제

- ▷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찬반양론이 있으므로 외국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단체 등과 협의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 (3) 지리산 반달가슴곰 방사 관련

- ▷ 지리산 반달가슴곰 적정개체수에 대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환

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차이가 있는바, 적정개체수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사된 곰의 생존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4) 북한산 탐방문화개선용역 관련

- ▷ 북한산 탐방문화개선용역의 참여연구진 구성 및 설문조사 내용을 볼 때 연구의 객관성이 의심되는바, 향후 사업 추진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계 전문가를 균등하게 참여시키고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 (5) 대피소 수용인원 부족

- ▷ 대피소 운영을 인터넷 예약제로 하고 있어 실제 대피자가 이용을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피소의 수용력을 제고할 것.

#### (6) 공단 직원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필요

- ▷ 국립공원관리공단 산재율이 OECD 평균보다 6배나 높으며, 특히 2010년 직원 안전사고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나타났는바,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7) 국립공원 국유화 필요

- ▷ 자연자원의 보호 및 체계적인 보전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립공원의

국유화가 필요한바, 이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유지 매수를 위한 적정예산을 확보할 것.

## (8) 국립공원 자연훼손 대책 마련

-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급증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심각한 상태인바, 한 번 훼손된 자연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의 회복기간을 가져야 하는 만큼 사전에 자연훼손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시정요구사항】

##### (1) 생활폐기물 고품연료화 시범시설 문제

- ▷ 시범시설 운전결과 고품연료 성형이 되지 않고, 개선공사 후에도 가동률이 낮아 국고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바, 시범시설 가동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이 본 시설 가동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것.

##### (2) 슬러지자원화 시설 관련

- ▷ 잘못된 합의서 작성으로 인하여 불법 허위 준공으로 발생한 시설 보완 추가비용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2010년 수리비만 43억이 발생하였는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 (3)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시찰 관련

- ▶ 주민지원협의체 해외시찰에 공사 직원들이 동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연수비를 부풀려 협의체 위원 및 공사간부들의 개인경비로 사용하였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 이러한 예산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매립가스 CDM 사업 관련

- ▶ 올해 CDM 사업 인증으로 확보한 탄소배출권의 국제거래에 대비하여 국제시장의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획득과 판매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 (2)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분쟁 관련

- ▶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매립면허권과 운영방식의 변경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반영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3) 수도권매립지 비산먼지 방지대책 마련

- ▶ 수도권매립지 환경조사에서 대기질이 점점 악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도로상 쓰레기 운반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 RDF 시범사업 문제

- ▷ RDF 시설 시범사업의 운영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본 사업 발주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폐기물 특성 등을 감안한 정확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신중히 추진할 것.

#### (5) 환경에너지 대학원 대학 설립계획 재검토

-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대학원 대학 설립은 환경부, 지식경제부 및 기존 대학의 환경 R&D 분야와 유사 중복의 가능성이 있는바, 설립계획을 재검토할 것.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처리요구사항】**

##### (1) 환경산업 지원예산 확보 필요

- ▷ 2011년 환경산업 지원예산이 2010년 대비 25% 감소하였는바, 중소 환경산업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할 것.

##### (2)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관련

- ▷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및 실적 미제출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구매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한바,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매계획 및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할 것.

- ▷ 친환경상품 구매는 탄소배출 감소 등의 편익을 가져올 수 있는바, 공공부문의 친환경상품 구매비중을 높이고, 민간부문까지 친환경상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 탄소성적표지제도 활성화

- ▷ 대기업 위주로 탄소성적표지가 인증되고 있는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 (4) 친환경마크 차별화

- ▷ 친환경상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사마크와 차별화하고,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할 것.

##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 【처리요구사항】

#### (1) 교육용 기자재 확충

- ▷ ‘측정분석 교육’을 위한 교육용 기자재 중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는 41대, 불용 대상 장비는 33대로 확인되었는바,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낙후된 장비를 확충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

## (2) 교육과정 선정 및 운영 관련

- ▷ 매년 개설과목 중 상당 과목의 수강생 수가 적어 다음해 폐강 및 통합되는 경우가 많은바, 교육과목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연간 계획인원을 정확히 산정할 것.

## (2) 고용노동부 소관

### ▶ 고용노동부 본부 ◀

#### 【시정요구사항】

##### (1) 직원의 고유업무 관련 외부강의 관리·감독 철저

- ▶ 고용노동부 직원이 본연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를 실시할 때 별도의 강의를 받고 있고 외부강의 시 경영계와 노동계의 비중이 있어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 외부강의 시 경영계와 노동계의 비중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통상적인 대가를 초과하는 강의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할 것.

##### (2)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 ▶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불법파견에 대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3)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 ▶ 공제회 적립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등 공제회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제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건설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

##### (4)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관리 철저

- ▶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단체가 고용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계

속 수행하는 등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고용  
중개기관에 의한 시장중개기능 활성화 및 고용센터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  
성을 높이도록 할 것.

#### (5) 대한상공회의소 건물매각대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련

- ▶ 국가기간산업의 인력양성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상공회  
의소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을 적립해서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다르게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보조금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관련 매각대금을 당초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맞게  
시설·장비 등 훈련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  
하여 실시할 것.

#### (6) 계좌제 훈련 자비부담 비율 합리적 조정 필요

- ▶ 미용, 요리 등 저임금 직종의 계좌제 훈련 자비부담 비율이 최대  
40%로 다른 직종보다 높아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  
른 직종의 자비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을 확대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7) 법외 불법단체 적법처리 필요

- ▶ 동희오토(주) 협력업체 관련 해고자 주도 단체인 “혁명적 사회주  
의 노동자당 건설현장투쟁위원회”는 그 활동목적이 헌법 등에 적  
합하지 않는데 법외단체들이 더 이상 제도권내 노조단체로 위장하  
여 활동하지 못하도록 적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8) 산재예방 관련 예산 확보

- ▷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근로자 인명피해, 외국에 비해 높은 산재율, 산업안전감독관 부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10년이상 정채되고 있는 산업재해율의 획기적인 감소를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특히 일반회계 투입 규모를 확대할 것.

## (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의 적법 처리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시정조치를 먼저 한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것을 개선해 나갈 것

## (10)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재발생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해조사는 물론,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중대한 산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11)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내실화 방안 마련

- ▷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은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 ▷ 사회적기업의 인건비지원비율이 높아 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자원, 기술, 경영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연계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제도 및 공적신용보증이용조건을 개선할 것.

### (2) 스마트워크 시대에 맞는 근로기준 제도정비 철저

- ▷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고용계약 및 근로시간 등 새로운 근로기준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여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3)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채용실적 미흡 개선

- ▷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채용실적이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산하기관의 청년채용을 독려하도록 할 것.

### (4)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 비정규직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에 대한 시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에 대한 제도적·행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지난 10년 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2배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임금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

#### (5) 여성고용률 향상 대책 필요

- ▶ 여성들의 학력은 급격히 높아지는 반면에 여성고용률은 OECD 회원국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여성들의 저임금 및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경력단절현상이 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6) 산전후휴가급여의 전액 사회부담 방안 마련

- ▶ 개별 기업이 산전후휴가급여를 부담하면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고용보험기금 및 국가지원을 통하여 산전후휴가급여 전액이 부담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체계 개편, 일반회계지원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7) 장애인근로자 저임금 개선대책 실시

- ▶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상당수의 장애인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 도입 등 저임금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8) 한국노동연구원 경영정상화 대책 마련.

- ▶ 한국노동연구원이 내부 노사분규로 인하여 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되어 노동관련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연구에 소홀한데 고용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사갈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연구원의 본연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담당기관인 총리실 산

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적극 협조할 것.

#### (9)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청년의 창업 및 자립성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청년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10) 최저임금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

- ▷ 현행 노·사·공 3자 결정방식으로 인해 매년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등으로 상·하한선 설정, 3자 결정방식의 변경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11만명에 이르고 이중 공공부문의 12만 3천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국가가 나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11) 한국잡월드 개관준비 철저

- ▷ 일본의 직업체험관이 적자누적으로 폐관된 점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운영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한국잡월드가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2)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 ▷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의 운영이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어 시스템 보완과 인력보강 등을 통해 효



유효적인 부정수급 방지책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

### (13)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신고 독려와 함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실직자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수급기간 확대 및 지급수준 인상 방안을 연구하여 고용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14) 은퇴고령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마련

- ▷ 2015년이면 은퇴자와 대졸자의 숫자가 역전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으로 산업현장에서 숙련노동자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15) ILO 협약 비준확대를 위한 대책마련

- ▷ 2010년 10월 현재 ILO 전체 협약 188개 중 비준한 협약 개수가 24개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63개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우리의 국가적인 위상과 노사관계 선진화에 걸맞은 ILO협약 비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16) 열악한 택시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안 마련

- ▷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택시부가세 경감세액도 포함되고 있어 이로 인해 택시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택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17)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운영체계정비 필요

- ▶ 대도시와 일부 직종에 계좌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생이 집중되고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증가에 따라 관리가 어려워 부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 계좌제 직업훈련의 낮은 취업률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조치를 강구할 것.

### (18) 원격훈련사업에 대한 지도관리 강화 필요

- ▶ 원격훈련 모니터링시스템으로 모든 훈련기관의 훈련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원격훈련이 사업체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 원격훈련기관들의 훈련비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 (19) 직장보육시설 지원수준 확대 필요

- ▶ 기업체의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사업주의 재정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직장보육시설 지원수준 확대 등 일반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0)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관련

-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사간 의견충돌이 있고, 그 정착여부도 달리 나타나고 있는 실정인데, 경제단체가 기금을 조성하여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을 공익사업 지원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인바,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정상적

인 방법으로 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전임자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을 강구할 것.

- ▷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일선 대상사업 현장에 연착륙되어 노사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노사자치와 자율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 ▷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상급단체 파견자에게 임금이 편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면제 한도기준을 정할 때 ‘소규모 노조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바를 감안하여 복수노조사업장에서 소수노조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21) 노동시장의 유연성 대책 강구

- ▷ OECD, WEF(세계경제포럼) 등에서 발표하는 통계수치를 보면, 우리의 고용노동현장은 상당히 경직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균형적으로 강구할 것.

## (22) 부당노동행위 적극적 대처 필요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관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잘 모른다고 부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 ▷ 한국공항공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제기사건에 대하여 관할 감독청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 (23) 필수유지업무제도 유지관련

- ▷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사분규의 원인으로 작용되지 않고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

### (24) 공공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 제고

- ▷ 공공기관의 평균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가 2007년 2.6개, 2008년 2.9개, 2009년 3.1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거나 반복되고 있는데 민간부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지도와 교육 및 점검 등 필요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 (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이루어졌는데도 사실상 임의 가입형태(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함)로 운영되어 가입률이 10%로 저조함. 민간보험은 과실책임주의를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함에도 왜곡된 정보 등에 의해 민간보험에의 가입률이 산재보험 가입률보다 높음. 정부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26) 역학조사 방법 개선

- ▷ 업무상 질병 원인 물질이 현재 밝혀진 물질 외에 의학의 발달에 따라 규명될 수 있다는 점, 현재의 작업환경만으로 과거의 작업환경을 추정하기 곤란한 점, 관련 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 역학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고, 역학조사의 근거가 산재 판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 ▷ 또한, 완결되지 않은 역학조사의 결과가 산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가 위원들의 의견을 열거할 필요가 있으며, 역학조사의 완결 여부를 표시할 필요가 있고, 집단역학 조사의 경우 비교대상을 명확히 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 (27) 삼성반도체 근로자 산재 승인

-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업보건 전문가가 미국의 공중보건학회의 2010산업안전보건상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외국의 기관투자가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 정부의 약자보호 차원 등과 관련해서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

### (28)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처벌 강화

- ▷ 산업재해 발생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는데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외국의 징벌적 배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에는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인식케 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 (29) 산재 입증책임 완화

- ▷ 산재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규정한 대통령령을 근로자 입증책임을 사업주와 분담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

전 대통령령으로 상향규정하기 전의 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고, 인과관계 등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산재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할 필요) 개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세계적 수준에 맞출 것.

### (30) 산재판정 제도개선 적극 협조

- ▷ 산재판정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를 위하여 국회차원에서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 필요.

### (31)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철저

- ▷ 타워크레인 서면검사에서 부품의 도면과 실제 사이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의혹이 있으므로 장비와 그 부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철저한 서면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 ▷ 클린건설현장인증 사업장내에 설치되고 안전검사를 실시한 타워크레인에서 안전결함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안전검사시 현장기사 건설노동조합이나, 전문가 등과 함께 기계의 구조 등 실질점검을 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검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이 각각 적용되면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사가 면제토록 되어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2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는 경우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양 법에 따른 검사주기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많으므로 사고예방에 더욱 치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2) 나노물질 사용 실태파악 및 강제적 이행 지침 마련

- ▶ 전세계적으로 유해성이 문제되고 있는 나노물질 사용과 관련한 관리 지침(나노물질 제조·취급근로자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지침)의 이행 여부 등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권고적인 관리지침의 규제 가능성을 높일 것.

### (33) 산재예방 사업 추진방식 개선 및 인력 충원

- ▶ 사업장의 기초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 부족으로 근로감독이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지도점검 방식도 표본 추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대해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 파장 파문이 클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하여 투명성 관리가 필요하므로 초동단계에서 기초사실 조사를 철저히 할 것.

- ▶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부주의한 조치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의 철저한 안전감독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노력할 것.

### (34) 산재예방 관련 업무의 지방이양 신중

- ▶ 산업안전보건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산하기관과 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므로 관련업무의 지방이양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고, 전체적인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이라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다

는 현재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해율이 낮아진 이후 순차적으로 지방이양을 검토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

### (35) 석면 안전관리 강화

- ▷ 석면관리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처리가 줄고 있고, 전반적으로 적발 건수도 전년 대비 줄어들고 있는 석면의 폐해를 고려하여 관계자가 긴밀하게 조사하고 시정조치 제재수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36)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 ▷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 및 복지보다는 기업의 이익 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정부가 위험물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토록 할 것.

### (37) 영양사를 통한 영양지도

- ▷ 사업장 건강증진운동은 실천·운영자가 보건관리자로 되어 있어 영양지도에 대한 역할수행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영양지도는 사업장에서 단체급식을 위해 고용된 영양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8) 임금체불 대책

- ▷ 임금체불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도산 등 사실인정, 확인신청서 처리 규정보다 훨씬 긴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임금체불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체당금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임금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 임금체불, 재산 은닉, 집단 체불 후 도피 등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를 적극 검토할 것.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 【시정 요구사항】

#### (1) 보조출연자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 보조출연자의 일당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야간·철야 근무에 있어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보조출연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
- ▷ 보조출연자가 촬영 중 화상이나 골절 등 신체 부상을 당할 위험률이 아주 높은데도 제작사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촬영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처리 요구사항】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활동 강화

- ▷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날로 증가함에도 이를 담당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담인력을 확대하여 부정수급자 적발활동을 강화할 것.

## (2)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지도 강화

- ▷ 2010년에는 경기호전으로 체불청산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서울청의 경우 청산율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악의적·상습적인 기업은 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할 것.

## (3)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가입률 제고

- ▷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률이 전국 87%에 비해 서울청이 83%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 등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4) 임금체불 대책 마련

- ▷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해결률이 떨어지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더욱 낮으므로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임금체불시 겪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 관리토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 제도의 안내를 강화할 것.
- ▷ 건설업의 특성상 영세건설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유보임금이 발생하고 있어 유보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므로 유보임금과 관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임금체불 사업체의 입찰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

## (5)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일부지청은 공단이 많은 지역보다 더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사망자수도 많은 등 관할지역의 산재형태는 업종과 규모의 구분없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 【시정요구사항】

#### (1) 영화제작스태프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방안 강구

▷ 영화제작사의 경우 근로자의 지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스태프의 급여가 체불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일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하도록 할 것.

#### (2) 건설현장의 산재발생 하청업체 책임전가

▷ 수원지청 관할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건설사가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산재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였는데 관련 조치를 지연한 측면이 있고, 감독관 문책이라는 미봉책이 아니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이 같은 불법적 관행이 재발되지 않게 철저한 감독과 위반사실 발견시 엄중 조치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대책마련

▷ 신문 광고 등에 상당한 고소득을 보장한다는 허위구인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허위구인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동두천 드림택시 문제 해결방안 강구

- ▷ 노사관계의 안정 및 해고자 복직을 위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

### (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사관계 관리감독 강화

- ▷ 중부청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적은 임대료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를 정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기업 근로자가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 (3)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에 중소기업이 많아 재해율이 높은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업의 경우 사전교육 철저 등 적절한 재해율 감소 대책을 수립할 것.

### (4) 외국인근로자 산재감소 대책 마련

-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소관 사업장에 외국인근로자가 전국 대비 50% 정도로 많은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므로 해당국 언어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없이 재해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 【시정요구사항】

#### (1)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책 마련

- ▷ 현대 자동차가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지도를 철저히 할 것.

#### (2) 아파트건설현장 거푸집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 적절 처리

- ▷ 해운대 아파트 건설현장 산재사고 관련하여 하청소장의 자술서를 보면 작업팀에 대한 임금체불, 원청의 작업강요, 무자격자 취업 등에 대한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재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법 위반시 적절한 처벌 필요.

### 【처리요구사항】

#### (1)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 ▷ 해운대 아이파크 화재의 발화지가 청소근로자 휴게실로 조사되었는데 사업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 훈련기관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 KTC 평생교육원이 훈련비를 부정수급 하는 등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설치, 훈련생에 대한 고용보험취득여부 확인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도록 할 것.

### (3) 근로감독관 정원 확보

- ▷ 노사관계 취약사업장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사관계 지도 주체인 감독관의 정원을 확보하여 취약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것.

### (4)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업무범위에 비해 관할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높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작업을 하는 등 현장관리 감독이 부실하고, 산업안전 점검회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동일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며 노사자율프로그램 승인 사업장에 현장점검 면제 등의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과 소규모 현장에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녹산 국가산업 단지에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점검면제 등 감독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시범사업장 선정 시 최소한의 기준설정과 산재관련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석면 해체·제거 현장점검 실적이 적는데 석면 해체제거 현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로 한 달 사이 10명이나 사망하였는데 청장의 현장방문 및 점검으로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소 노력을 기울일 것.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 【처리요구사항】

#### (1) 장기 노사분규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 ▶ 발레오전장, KEC 등 장기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는 사업체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노사분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 동산의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강구

- ▶ 동산의료원 비정규직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 (3)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 대구·경북지역 유보임금이 43일로 가장 길게 나타나고 있는데 건설업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

#### (4)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 ▶ 대구·경북지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이행률이 아주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5)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관 근로자 사고사망만인율이 6개청 중에 가장 높고 재해율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등 산재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지청의 산업안전활동을 강화할 것.

## (6) 위험요인자기관리 시범사업장 지도감독 강화

- ▷ 성서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위험요인 자기관리 사업” 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장의 산재비율이 아주 높고 전체 산재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이 목적대로 잘 진행되어 산재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7)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철저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점검 결과 신고제로 변경된 이후 규정위반 사업장이 많은데 지도·점검·홍보를 철저히 하고, 신고대상 건물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

## (8)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 소속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덕 고용주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임금체불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 【시정요구사항】

#### (1) 계좌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관리강화

- ▷ 계좌제 직업훈련의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계좌제 훈련기관들이 출결관리 등의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많아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것.



## (2) 우편원격훈련 부정수급기관 제재강화 필요

- ▷ 우편원격훈련의 부정수급으로 훈련기관들이 대규모로 적발된 만큼 해당 기관들이 훈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 (3)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성희롱예방교육 강화 필요

- ▷ 여성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점검실적이 저조하고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점검대책을 마련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광주지역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

- ▷ 2010년 2/4분기 광주지역의 청년실업률은 11.6%로 전국평균 7.7%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청년들이 장기적, 안정적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2) 취업박람회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 ▷ 취업박람회 참가업체수 당 취업자 수는 2.1개소 당 1명으로 전국에 비해 절반수준이나 평균비용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채용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 할 것.

## (3) 금호타이어 노사관계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

- ▷ 금호타이어에서 노노·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워크아웃 상태인

회사사정을 감안하여 노사관계가 회복되어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4)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 ▶ 2010년 광주청 관할지역내의 사업장 재해율이 매우 높고 특히 조선업 재해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서비스업 산재비중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산재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

#### (5) 역학조사 후속조치 및 산업안전관련 노사협의체 활동 강화

- ▶ 연초 여수광양산업단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석유화학사업장 노동자와 건설노동자들이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
- ▶ 작업장 유해물질 발생시 발주처에도 고지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는 발주처와 도급업체, 화학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안전과 관련한 노사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것.

#### (6) 임금체불 대책 수립

- ▶ 2009년 임금체불 미청산액 350억, 올해 발생된 임금체불액은 8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임금체불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악질·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방식을 마련하고 강력한 대응방식을 마련할 것.
- ▶ 유보임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전

청 관할지역내 건설현장 유보임금 점검 및 신고센터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 특별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며, 발주처 및 원청건설사에 현장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 【처리요구사항】

#### (1) 사회적 기업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대전청의 사회적 기업 숫자 및 사회적 일자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2) 발레오공조코리아(주) 노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 강구

▷ 기업해산을 선언한 발레오공조코리아의 노사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3) 사망만인율 감소 대책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의 사망만인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는데 교육 및 홍보와 더불어 지도점검을 더 한층 강화하여 재해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것.

#### (4)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필요

▷ 한국타이어에서 지속적으로 산재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별근로감독

등 재해감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대재해기록 은폐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것.

#### (5) 사업장 안전점검 방식 개선 및 재해상황의 정확한 공개

- ▷ 재해율만으로는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장 선정의 기준으로 부족하고 위험정도 등을 반영하여 전략적으로 재해예방사업장을 선정할 필요가 있고, 사전 지도·점검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재해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건이 축소·은폐되지 않도록 하고,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개할 것.

###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 【시정요구사항】

#### (1) 노사정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 ▷ 노사정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으로 기관목표인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문제 등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합의도출 등을 감안하여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 노사정위원회의 대표성 강화

- ▷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는 그 역할에서 설립당시의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바,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사정 어느 일방의 탈퇴·불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도화해 나아갈 것.

## 【처리요구사항】

### (1) 노사정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 사회적합의 도출을 위한 노사정 참여기구로서의 위상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입법화하기 어려운 분야나 영역에 대해 능동적으로 사례를 조사하고 합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메뉴를 개발하도록 할 것.
- ▷ 노사정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조직의 인적구성을 어느 특성부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원칙을 강구할 것.
- ▷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이 다원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어느 특정집단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의제선정의 제도화된 시스템을 강구할 것.
- ▷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참여기구임에도 각종회의는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그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정부의 대참여를 낮추거나 그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중앙노동위원회 ◀

## 【처리요구사항】

### (1) 공익위원 선정 및 운영방식 등의 개선 필요

- ▷ 현재 공익위원 선정 및 위촉방식은 노사가 상호 배제하고 남은 위원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인해 관련단체에 우호적이며 독자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비전문가가 위촉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이러한 선정 및 위촉방식의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

- ▷ 심판사건 공익위원의 사건배정방식을 보면 중노위는 추천방식, 지노위는 순번제 등으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심판사건배정에 있어 어느 일방의 공익위원이 편중될 수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바, 사건배정의 공정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공익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의 단계에서 성별, 연령별 및 계층별 등을 최소한만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 ▷ 심판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경우 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법률전문가를 지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2)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의 자질 및 전문성 제고

- ▷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조사관의 자질 및 전문성에 문제가 많다는 일부 지적이 있는바, 위원들에 대해서는 위원구성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격요건의 강화와 재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질도 전문성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조속히 위원 행동강령을 마련·시행하고 조사관들의 전문성 제고방안으로는 제도상 마련된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별도의 직무역량강화제도를 마련·시행하며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노력을 할 것.

### (3) 노동위원회 분쟁사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 현재 노동위원회 분쟁관련 사건은 5심제이나 중노위 재심판정 주 일부가 법원으로 가고 있는데 지노위나 중노위를 광역화하거나 중노위를 임의 사항으로 하는 등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4)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

- ▷ 2007년 7월 비정규직근로자 차별시정제도 시행이후 2,300건이 접수되었는데 인정건수는 1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의 활용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 노동조합에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신청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여성이나 취약층을 대변하는 공익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

## ▶ 근로복지공단 ◀

### 【시정 요구사항】

#### (1) 공단의 복지사업 계획수립 철저

- ▷ 전주 스포피아운영이 폐지되고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고 매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투자금 대비 자산가치가 떨어져 50여억원의 자산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이러한 시설투자 사업은 사전수요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 (2) 사업주의 행정소송 보조참가 개선

- ▷ 산재불승인 관련 행정소송에서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조참가인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예외적이어야 함에도 공단이 공문으로 보조참가인 참여를 독려한 것은 공단의 설립 목적인 근로자 복지증진과 보호, 재해보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해 보이므로 삼성반도체와 같은 사업주의 소송보조참가 독려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

## (3) 공단직원에 대한 부적정한 산재승인

- ▷ 근로복지공단 산재율이 동종업종에 비해 산재승인율이 높고 노동부 감사결과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었음.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본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해야하는 공적인 기관으로, 산재로 처리하기 부적정한 재해까지 산재로 판정하는 것은 공단 내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으로 이를 시정할 것.

## (4)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사업 관련 인력 충원

- ▷ 근로복지공단이 4인이하 사업장 퇴직연금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 인력을 확보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5) 공단직원 근무기강 해이 근절

- ▷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상습도박으로 벌금형에 처해 졌음에도 공단에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데, 범죄사실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 직원들의 근무기강 해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



## 【처리 요구사항】

### (1) 진폐와 관련 최종사업장 적용 문제

- ▷ 진폐 산재적용 사업장 결정 기준에 따르면 보험급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특정 사업장에서 찾지 못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그 적용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할증, 환산재해율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재보험료율 적용

- ▷ 제품의 특성상 전자제품부분품의 금형이나 자동차부분품의 금형 간에 차이가 없는데도 산재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개별사업장에 대한 업종 적용시 보다 면밀히 사업장 실태를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들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산재의료기관의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강화

- ▷ 산재의료기관 현장 조사 결과 점검 의료기관의 90%이상의 기관에서 허위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보다는 환수금액을 높이는 등 보다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실사 의료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4) 직업복귀율 상향 및 직업재활급여 집행 강화

- ▷ 2008년 7월 이후 요양관리를 강화하면서 재활과 직장복귀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되었는데도 직업재활급여의 집행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산재장해자의 원직복귀율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 ▷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의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잘 운용하여 산재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시스템의 체계화를 위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10%로 저조함. 민간보험은 그 성격상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기계 차량보유 기사 등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시 소득노출 우려 및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고 있고, 쿼서비스·대리기사의 경우 재해위험성으로 인해 민간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장수단이 없으므로 산재보험 가입 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6) 부정수급조사 활성화

- ▷ 부당지급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현재 공단의 전담조직을 충분히 활용하고, 사후조사 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수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도록 할 것.
- ▷ 매년 수십억 이상의 산재보험급여가 부정수급되고 있다는 것은 산재보험급여 지급 심사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단자체

감 강화 등 사후조사 이외에도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7) 직업성 암 관련 발암물질 확대

- ▶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직업성 암관련 산재 승인률이 매우 낮고, 7종 외에도 국제적 수준과 학계에서는 발암가능성 물질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발암물질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8)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개선

-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과거 수십 년 전과 별 다를 바가 없음. 시행 규칙 때에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였는데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서 법규성을 들어 낮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들어 불승인을 하고 있음. 조속히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근로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
- ▶ 업무상 과로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예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산업현장 근로자의 과로에 의한 업무상 질병 불승인률이 높는데, 근로자의 연령대가 40~50대인 점과 업무강도에 따른 과로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된 현재의 인정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

-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도입 이후 산재 승인율, 특히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산재승인이 낮아지고 있음. 이는 종합적 판단을 위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의 누락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건당 평균 판정시간도 지나치게 적어 부실심사가 우려되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후 위원회에 보고할 것.

- ▷ 주치의사와 공단지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질병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고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여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노사정합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재근로자의 정당한 질병판정을 위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강화, 업무부담평가 인력 확충, 항변권 보장, 계량화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0) 장애등급판정

- ▷ 장애등급 판정 관련 심사청구·재심사 청구가 증가하는 것은 공단의 산재판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사례를 축적하여 유사 사례의 산재판정시 참고가 가능토록 할 것.

#### (11)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적극적 지원

- ▷ 중소기업에 한해서 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대지 구매나 건물 신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등을 선별하여 공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공단에서 유도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

#### (12) 산재병원 장례식장 선정방식 개선

- ▷ 산재병원내 장례식장을 위탁하면서 병원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기존 운영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타 업체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므로 능력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제한하면서

타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3) 공단직원 처우 개선

- ▷ 징수통합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전출 희망직원이 상당한 규모였는데 동일 지역 내 근무가능성, 민원업무 및 관련 분쟁 감소 등 처우 개선 욕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과 다른 기관과의 처우격차 해소, 순환보직의 애로사항 개선 등 전향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징수통합에 따른 조직분위기를 쇄신할 것.

##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처리요구사항】

#### (1) 글로벌리더 양성사업 내실화

- ▷ 글로벌 리더 양성사업은 해외취업연수사업과 해외취업알선사업으로 구분·추진되어져 오고 있으나, 취업률이 저조하고 지원기관의 평가부실에 따른 중복지원이나 지원대상기관의 임의적 확대에 의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이 문제되어 지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들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 원인을 정치하게 파악하여 당초의 사업목적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 직업방송 내실화 필요

- ▷ 한국직업방송은 개국초기임에도 국민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제공과 올바른 직업관 정립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으나 예산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시청률이 낮은 등 보완해야할 문제들을 안고 있는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한 예산 확보를 통한 충실한 콘텐츠 개발,

시청률 제고 등 개선책을 강구할 것.

### (3) 국가자격 시험관리 전문화·내실화 관련

- ▷ 국가기술자격시험 종목은 현재 약 600여개로 너무 많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시대적인 흐름에 부합하게 통·폐합하고, 녹색성장관련 종목 등 새로운 자격종목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전문화 및 내실화 대책을 강구할 것.
- ▷ 국가기술자격제도 운영과정에서 학력으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
- ▷ 국가전문자격시험의 하나인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최근 선택과목간 점수편차가 불합리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

### (4) 한국어능력시험의 관리 철저

- ▷ 일선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소통문제로 심각한 산재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무지시 정도는 이해가 가능한 상태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의 출제수준이나 시험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 기능장려 사업 내실화

- ▷ 2010년 5월 「숙련기술장려법」이 제정되어 기능장려사업의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확보되어 진다고는 하나 그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장 등 기능 인력의 보존 및 장려차원에서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인력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시정 요구사항】

#### (1) 건강관리수첩 발급 미흡

- ▷ 건설업 및 조선업 종사 노동자 대한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실적이 지극히 미흡한데 직업성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라는 건강관리수첩제도의 취지에 맞게 건설노동자와 조선노동자, 하청노동자의 특성에 맞게 발급요건을 개선하고, 관련제도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

### 【처리 요구사항】

#### (1) 산업안전보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강화

-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등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는 경우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 외국인근로자 산재 저감 및 후속 지원

- ▷ 외국인근로자 재해자가 늘고 있고, 입국 1년 내에 사고 당하는 비율이 높고 후속조치 미흡으로 귀국후 반한감정의 원인이 되므로 공정사회의 국격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재감소 노력을 각별히 할 것.

#### (3) 나노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 ▷ 나노물질과 관련 기술은 심혈관계 영향과 간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한번 방출되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나노물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규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공단의 관련 지침 제정은 시의적절하나 현장에서의 지침의 시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강화 할 것.

#### (4) 서비스업종 및 중소기업 재해 감소 노력 필요

- ▶ 서비스업 재해 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공단이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제, 특히 산업안전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업종 및 중소기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기준 마련하고, 외부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등 서비스업종과 중소기업의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5) 역학조사 결과표현 및 실시 방식 개선

- ▶ 공단의 역학조사결과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역학조사 방식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정도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역학조사 결과의 표현 방식을 역학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의 여러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할 필요가 있고,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 ▶ 집단역학조사의 결과가 통계적 정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모집단과 표본집단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고, 기간 및 대상을 넓혀서 결과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할 것.

#### (6) 클린사업장 적정 지원

- ▶ 클린사업장 지원에 의한 영세사업장의 산재율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든 것은 영세업체에 대한 국가의 책무 이행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적절해 보이므로 적정 예산이 편성과 사업 수행 방식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 클린사업장 선정 시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조사, 특수건강검진 등 법에 의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선정토록 하고, 소모품 지원을 지양하고, 선정방식 및 선정기준을 객관성 있게 할 것.

### (7) 산업재해 통계방식 변경

- ▷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4일이상 통원치료도 산재로 보고 있어 아주 경미한 부상도 산재로 처리되는 현행 산업재해율 산출방식이 국가산업재해율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 선진국의 산재통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현장의 근로환경이라든지 재해노출 상황,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보이는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감안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재해통계에 있어서도 고용형태별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8) 건설업체 본사 안전조직 설치

- ▷ 산안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 규모별로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사에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규정은 없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100대 건설업체 가운데서 본사에 안전조직이 있는 업체보다 없는 업체의 재해율이 훨씬 높으므로 100대 건설업체 중 안전담당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업체의 본사에

안전부서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9) 희망근로사업 안전사고 방지대책 마련

- ▶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50대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사고는 생계와 직결되므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 (10) 인사관리 투명성 확보

- ▶ 연임불가 판정을 받은 교육원장을 재직 중 1급으로 특별채용 하였으며, 더구나 공단 서열상 별정직 교육원장보다 아래 직급인 전문직 1급으로 채용한 것은 밀실인사·맞춤형 채용 의혹이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것.

#### (11) 적정한 정규직 채용

- ▶ 공단의 정규직 채용인원수에 비해 인턴채용 비중이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인턴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적어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관련 업무지식을 갖추고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할 것.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시정 요구사항】

#### (1) 장애인 취업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 강화 필요

- ▷ 구직상담, 직업능력평가내용의 체계적 기록, 적합직종개발, 취업후 적응지도, 장애인콜센터 설치 등 장애인 취업을 위한 체계적 서비스를 강화할 것.

#### (2) 장애인기능대회 참가자격 확대 및 상금인상 필요

- ▷ 장애인기능대회의 참가자격이 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하는 기능대회보다 협소하고, 기능장려금 및 상금도 장애인기능대회가 기능대회보다 크게 낮아 이를 시정하도록 할 것.

### 【처리 요구사항】

#### (1)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필요

- ▷ 청년장애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60% 이상의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는 장애인시험고용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할 것.

#### (2)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의 내실화 필요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많지만 실제 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협약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한국고용정보원 ◀

**【시정요구사항】**

(1) 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상 문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 ▷ 한국고용정보원 운영상 인사, 용역발주 등에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여 한국고용정보원 기관운영을 바로잡을 것.

**【처리요구사항】**

(1) 고용보험 관련 대국민 온라인 접근성 향상 방안 마련

- ▷ 대국민 접근성이 낮고 홍보가 부족하여 고용보험관련 온라인 신청율이 낮게 조사되고 있는데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

**【시정 요구사항】**

(1) 장애인시설 설치에 점검, 감독 강화 필요

- ▷ 신축건물의 화장실, 점자블록 등 장애인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규격이 기준에 미달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 **【처리 요구사항】**

### **(1) 교직원의 엄격한 인사관리 필요**

- ▷ 교수진 평가제도를 통하여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하고, 교직원의 부조리, 근무태만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

### **(2) 평가순위가 낮은 캠퍼스의 통·폐합운영 필요**

- ▷ 운영 실적이 좋은 캠퍼스에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실적이 낮은 캠퍼스는 통폐합하여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도록 할 것.

### **(3) 고령자 및 여성들의 직업교육 확대 대책 필요**

- ▷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직업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여성들의 지원을 대비 입학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므로 입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학과개편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 **【처리 요구사항】**

### **(1) 직업훈련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졸업생 관리의 다양화 필요**

- ▷ 직업능력개발 교원양성의 설립취지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본래의 대학운영 목적에 충실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졸업생을 진출시키도록 할 것.

## (2) 노동행정연수원 원활한 운영 필요

- ▷ 노동행정연수원으로 통합된 이후 (구)한국노동교육원 직원 직급부여와 관련한 형평성 제기와 취업규칙 통합 관련 등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충실히 할 것.
- ▷ 노동행정연수원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조직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

### (3) 기상청 소관

#### 【시정요구사항】

##### (1) 방재기상업무협의회 불참기관 참석 필요

- ▷ 올해 방재기상업무협의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2가지 사항만 논의되었고, 구성기관이 아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참여한 반면 오히려 소방방재청,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참여해야 하는 핵심기관은 불참하였는바, 불참기관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태풍 및 호우 대비 등 기상과 방재업무 논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

##### (2) 다이얼 부이 서비스 개선

- ▷ 해양기상관측장비인 다이얼 부이 중 일부 고장으로 4개 부이만이 정상가동되고 있으며, 근처 관측장비에 의한 대체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고장난 부이를 즉시 교체하는 등 다이얼 부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

##### (3) 성과보고서 왜곡 시정

- ▷ 2009년 감사원 감사에서 실적 달성률 왜곡, 허위보고 등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문제가 적발되었는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4) 해저지진계 복구

- ▶ 울릉도 해저지진계가 지난 1월 고장발생 후 약 10개월 동안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설치과정에서 부실시공 등 문제가 있었는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고장난 해저지진계를 신속히 복구할 것.

### 【처리요구사항】

#### (1) 지진 관측 및 통보 개선

- ▶ 현재의 지진통보 체계로는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진 관측 장비의 26%가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현재 3분 정도 소요되는 지진 통보 시간을 단축시켜 지진 조기 경보체제를 구축하고, 노후화된 지진 관측 장비의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 ▶ 동해안에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지진규모 및 파도규모에 대한 사전통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세울 것.

#### (2) 남·북 기상협력 강화

- ▶ 통일 이후에 기상통합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상청 차원에서 북한의 기상정보를 파악하고, 기상영역에서의 교류·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속히 추진할 것.



### (3) 특이기상 예보 정확도 향상 필요

- ▶ 태풍 곤파스 및 9월 21일 폭우와 같은 특이기상에 대한 오보와 관련하여 예보 정확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는바, 특이기상에 대한 연구·분석을 강화하여 예보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기상예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보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바, 예보관의 순환보직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예보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것.

### (4) 백두산 화산 폭발 대비

- ▶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과학적 분석을 통해 화산 폭발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주변국인 중국, 일본, 북한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 화산 폭발시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인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농림부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비방안을 세울 것.

### (5) 기상청 휴대폰 앱 관련

- ▶ 지연되고 있는 휴대폰 앱 및 모바일 웹 서비스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국민의 기상정보 접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앱 개발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는 초단기예보, 생활지수, 위성영상서비스를 기상청의 무료 앱에 포함시켜 제공하도록 할 것.

## (6) IPCC 평가보고서 관련

- ▷ IPCC 평가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협상에 유리한 과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참여국들 사이에서 이견이 많은바, 32차 총회 개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필요한 과학적 의견을 평가보고서에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할 것.

## (7) 공항 윈드시어(난기류) 탐지장비 확충 필요

- ▷ 국내 공항에 윈드시어 탐지장비가 미비되어 있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바, 공항에 윈드시어 경보체제 및 탐지장비를 시급히 도입할 것.

## (8)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관련

- ▷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시 기상관측망 평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상관측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국가 기상관측망 계획’을 수립할 것.

## (9) 기상특보 기준 재정립

- ▷ 현행 기상특보 기준이 보수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바, 지역에 따른 호우의 강우강도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하고 기준을 현실화·세분화하는 등 특보기준을 재정립할 것.

## (10) 기상부문 R&D 관련

- ▷ 기상청 R&D가 현재 황사, 기후, 지진 등의 분야에서 내부적으로 분산되어 있거나, 외부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기상청 R&D를 총괄하는 국립기상과학연구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
- ▷ 국립기상연구소 정원 축소를 재검토하고, 고급인력 확보 및 조직 확대 등 기상청 R&D 부문을 강화할 것.

## (11) 기상콜센터 예산 확대 필요

- ▷ 기상콜센터 콜수가 폭등하여 업무강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이 10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예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인력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2) 우박 사전예보 도입

- ▷ 우박에 대한 사전예보가 없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바, 정확한 사전예보 도입을 위한 연구 및 분석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13) 기상레이더 자료 통합 운영

- ▷ 국토해양부에서 홍수예보를 위해 6개 레이더를 구축하는 것은 기상청의 업무영역과 일부 중복되므로 기상청 주도하에 기상레이더 자료의 범정부적인 공동활용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

#### (14) 기상조절 연구 활성화

- ▷ 미국, 중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상조절 연구의 수준에 격차가 있으므로 인공강우, 안개저감 및 강우억제 등 다양한 기술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 (15) 4대강 수문기상 모니터링 관련

- ▷ 4대강 사업 관련 ‘상세 수문기상 모니터링 기술’ 예산이 2011년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홍수예방방안으로서 기상특보 및 모니터링 등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할 것.

#### (16) 천리안 위성 관련

- ▷ 현재 천리안 위성이 궤도상 시험단계에 있는바, 2011년부터 위성 자료를 다양한 부분에 활용하며, 관련기관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
- ▷ 후속 위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예산편성 일정 중에 나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는바,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17) 민간 기상산업 진흥

- ▷ 우리나라 시장규모가 협소하고 기상청과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민간 기상산업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상청과 민간의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18) 폭염 특보 모니터링 실시

- ▷ 폭염 관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망자 등의 폭염 피해상황 집계 및 피드백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폭염 특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고온건강경보시스템을 국민에게 지속 홍보할 것.

## (19) 지진 내진설계 관련

- ▷ 지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의 내진설계가 중요한 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내진설계 도입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20) 기상자원지도 보급

- ▷ 고해상도 수치 기상자원지도가 도입 목적과 달리 주로 연구용으로 보급되고 있는바, 기상산업계에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21) 기상정보 전달시간 단축

- ▷ 현재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기상상황과 일본 위성으로부터 제공받는 관측 데이터 사이에 약 1시간의 시차가 존재하므로, 관측 데이터를 예보에 즉시 반영하여 기상정보 전달 소요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22) 국가기상위성센터 인력 부족

- ▷ 국가기상위성센터의 계획 인원은 87명이나, 현원은 절반인 43명으로 인력 부족으로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바, 위성 활용 극대화를 위해 위성자료 분석, 운영,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할 것.

## (23) 슈퍼컴 3호기 유지·관리

- ▷ 슈퍼컴 2호기의 경우 지난 6년간 328건의 장애가 발생하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슈퍼컴 3호기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고장률을 최소화할 것.

## (24) 기상감정업 관련자격증 제도 개선

- ▷ 예보기술사 자격시험 응시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 2012년부터 시행예정인 기상감정사 자격시험의 유명무실이 우려되는바, 제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충분한 홍보 및 수요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25) 기상레이더 국산화 필요

- ▷ 현재 기상레이더가 100% 수입됨에 따라 고장수리 지연, 기종 간 호환 불가 등 문제가 있는바, 기상청 차원에서 기상레이더 기술 자립을 위한 중장기적인 자체 레이더 개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것.

## (26) 공항 저시정경보(안개예보) 선행시간 관련

- ▷ 공항의 결항통보는 2시간 전에 이루어지는데 기상청의 안개예보는 40분 전에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를 보는 승객들이 많은바, 안개예보 선행시간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할 것.

## (27)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

- ▷ 외국에 비해 기상청 예산에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바, 기상청 예산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사용료를 인상할 것.

## (28) 우주기상 부문 강화

- ▷ 우주기상 정보의 중요성·필요성에 비해 현재 우주기상 관측 및 예측모델 개발 등 준비가 미흡한 바, 국제공조 및 국내 관련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우주기상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것.

## (29) 국가기상위성센터 경비시스템 강화

- ▷ 국가기상위성구센터는 국가의 주요 시설이므로 경비시스템을 강화하여 방비를 철저히 할 것.

## (30) 라디오존데 장비 확충

- ▷ 구름형성 범위인 약 30Km에 비해 라디오존데는 약 100Km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기상관측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바, 장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 (31) 기상레이더 주파수 관련

- ▷ 기상청이 도입 예정인 이중편파 도플러 레이더의 주파수를 S밴드(S-Band)로 한정하는 것은 가격 및 운용비용, 우리나라의 지형이나 기상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바, C밴드(C-Band)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32) 슈퍼 컴퓨터 내구 연한 기준 필요

- ▷ 슈퍼 컴퓨터의 도입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슈퍼 컴퓨터 내구연한의 구체적 기준 및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

### (33) 세계기상기구(WMO) 국가 분담금 미납액 해소

- ▷ 2007년 우리나라가 세계기상기구의 집행 이사국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바, 국가 신뢰도 하락 및 국제 기상협력 활동 차질 방지를 위해 미납액을 해소하고 부담금을 완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8. 감사원 감사청구사항

▷ 해당사항 없음.

## 9. 증인고발 사항

▷ 해당사항 없음.